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및 유통실태 조사연구

김영훈	연구위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
남민지	초청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 영 훈 연구 위원 연구총괄, 1장, 3장, 4장, 5장, 6장 작성
권 태 진 선임연구위원 2장 작성
남 민 지 초청 연구원 자료수집, 2장, 4장 작성

머 리 말

지금까지 경제 분야에서 남북한 간 교류의 주류는 교역보다는 물자지원에 있었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와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 현상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 남북한 간 경제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차원의 교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남북한 간 교역 확대와 관련해 농업부문에서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이다. 이에 관해 남한 내에는 다른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정책의 기초가 뚜렷하게 정립되기가 어려웠으며 제도적 뒷받침은 취약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을 중심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유통, 소비에 관해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도출해 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남북 간 농업부문 교류에서 농림산물 교역의 위치와 의미,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실태, 북한산 농림산물 국내 유통 및 소비 실태, 반입 및 유통상의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 결과가 관련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에게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이 연구 수행에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8.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우리는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남북교류 확대라는 대북정책의 입장과 국내 시장 안정화라는 농업정책의 입장이 양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함에 따라 관련 정책기조가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은 취약한 상태이다.

현재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 품목 수와 반입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또 단기적으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낮으므로 관련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것이 당장 큰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과 제도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는 남아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기조와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의 기본입장에 의하면 남북한 교역은 내국 간 거래이다. 이는 ‘남북교류협력법,’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담겨져 있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 대부분의 북한산 상품은 포괄승인품목으로서 무관세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정책의 입장에서는 국내 농가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으로나마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입장을 반영해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입 승인절차 및 교역대상 물품(통일부 고시)’에서는 189개 품목을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특별히 지정해 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말미암아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 반입과 유통에서 몇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반입승인품목의 지정과 반입승인단계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밖에 통관 및 물품인수 과정의 문제와 유통 과정의 문제는 관리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해 장기적인 농업정책 기조를 다음과 같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산 농림산물의 자유로운 반입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점차 제거한다. 둘째,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수립한다. 셋째,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증대에 따른 국내 해당 농가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한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 간에 교역을 촉진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범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규범이 완비되고 안정성이 증명될 때까지 현행 반입관리제도의 틀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단기적인 농업정책기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농림산물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남북한 당국자 간에 협의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는 원산지 증명 및 확인과 관련된 문제 해결, 육상 운송로를 확보하는 등 물류비 절감, 이들 문제를 논의할 연락 및 협의기구 설치 등이다. 북한과의 공동 노력과는 별도로 국내의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남북한 교역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북한과의 공동 노력과는 별도로 국내의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 제도나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남북한 교역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우선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 조정과 승인절차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식량작물, 육류, 유제품 등 식량용 농축산물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반입금지품목으로 따로 관리하는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승인대상 품목과 유사·대체관계에 있는 품목들 중 반입이 증가되면 국내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는 품목도 있다. 향후 국내 수급 동향, 현행 농산물 관세제도의 문제점, 포괄승인품목에 대한 민

간의 반입상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시 농림수산물부 내의 의견 접수와 수렴이 수출입 관련 부서로 창구가 단일화 되어야 하며 농림수산물부의 검토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 반입 승인 시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국내수급 및 가격동향에 대한 관측이 실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여부 결정에 관측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농림산물 품목 중 시장접근물량이 증량될 경우 해당 북한산 반입물량을 공급량에 반영한다면 연간 반입 한도물량의 증량이 가능해지며 남북한 교역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정 반입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농업협력의 결과로 생산된 농림산물과 육로 운송으로 반입되는 농림산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순 반입 시의 한도물량과는 별도로 반입물량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국영무역품목의 경우 협력사업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책정하는 방안도 있다.

한편 북한산 농림산물 유통업자와 소비자 면접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도 있다. 우선 국영무역대상 품목의 국내유통 단계에서는 품위가 낮고 정선상태 및 포장이 불량하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수도 지정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정선과 선별 작업을 거친 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산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반적인 문제는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즉,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시기, 물량 등이 불확실해 계획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북한 교역이 가진 고유의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의 협의뿐 아니라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반입관리제도가 더 심화되어야 한다.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유통업체 및 최종소비자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다. 그러나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최근 원산지 표시제도

가 강화되어 북한산 농림산물의 원산지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반입 및 유통 참여자와 감독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Study on the Status of Import and Marketing of orth
Korean Agricultural and Forest Products**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much progressed in quantity since the 6.15 declaration. So fa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focused on aids rather than trade. It is natural when we consider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There remain many issu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further revitalize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specially, commercial trade.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requir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lthough increased commercial trade between two Koreas are important.

Regarding revitalization of inter-Korean trade, a possible solution is to increase trade volume of agricultural and forest products in a short term. However, some people do not agree on it. Especially, farm producers worry about the impact on domestic markets when imports of North Korean products are increased. The settlement of related policies and improvement of the existing system are essential to revitalize inter-Korean trade.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status and problems of imports, marketing, and consumption of North Korean agricultural and forest products in South Korea. The contents of the report are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describes the position and importance of agricultural and forest trade in inter-Korean agricultural and forest cooperation. The second chapter investigates the trend of imports on agricultural and forest products produced in North Korea. The third chapter shows the current marketing conditions and consumption of the imported products in the domestic markets. Finally, policy issues and suggestions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are raised.

Major issues of policy suggestions are problems to solve together the South and the North, improvement of importing system and manage-

ment on North Korean agricultural and forest products, and marketing and consumption in domestic markets.

Researchers: Kim, Young-Hoon, Tae-Jin Kwon, and Min-Ji Nam

E-mail address: kyhoon@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 목적과 활용 3
- 3. 주요 선행연구의 검토 4
- 4. 연구범위와 방법 6

제2장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추이

- 1. 남북한 교역 동향 9
- 2. 북한산 농림산물 반출입 13
- 3. 북한산 농림산물 품목별 반입동향 14

제3장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실태 - 제도와 문제 -

- 1.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정책과 제도 27
- 2.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 37
- 3. 북한산 반입 관련 문제점 43

제4장 북한산 농림산물의 국내유통과 소비

- 1. 국영무역대상 농림산물의 유통 51
- 2. 유통 단계의 문제 59
- 3.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소비 실태와 선호 61

제5장 정책 방향

- 1. 반입 관련제도 개선 방향 67
- 2. 국내 유통의 개선 방향 71

제6장 요약 및 결론	75
부록 1: 2005년 북한산 농산물 반입 대책	81
부록 2: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일반소비자)	85
부록 3: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북한방문객)	91
참고 문헌	95

표 차례

제2장

표 2- 1. 남북 교역 건수 추이	10
표 2- 2. 남북 교역 품목 수 추이	10
표 2- 3. 북한의 대외 무역액	11
표 2- 4. 북한산 반입품목 구조	12
표 2- 5. 남한산 반출품목 구조	12
표 2- 6. 북한산 반입상품 대비 농림산물 반입 비중	14
표 2- 7. 북한산 농림산물 주요 반입품목	15
표 2- 8. 북한산 주요 농림산물 반입규모 비교	16
표 2- 9. 품목별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금액	16
표 2-10. 대두 수입 동향	17
표 2-11.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대두 반입 비중	18
표 2-12. 녹두 수입 동향	19
표 2-13.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녹두 반입 비중	19
표 2-14. 팥 수입 동향	20
표 2-15.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팥 반입 비중	21
표 2-16. 송이버섯 수입 동향	22
표 2-17.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송이 반입 비중	22
표 2-18. 고사리 수입 동향	23
표 2-19.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고사리 반입 비중	24
표 2-20. 표고버섯 수입 동향	25
표 2-21.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표고버섯 반입 비중	25
표 2-22. 들깨 수입 동향	26
표 2-23.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들깨 반입 비중	26

제3장

표 3- 1. 농산물 반출입에 대한 대북정책과 농업정책의 입장	29
표 3- 2. 남북 간 반출입 관련 제도	30
표 3- 3. 국영무역대상 농림산물 반입승인 조건	40
표 3- 4. 집중감시품목의 반입한도물량 운영 사례(2008.1)	41
표 3- 5. 저율관세품목의 반입한도물량 운영 사례(2008.1)	42
표 3- 6.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 제도화 관련 합의서 체결·발효 현황 ..	43
표 3- 7. 북한산 농림수산물 위장반입 사례	45

제4장

표 4- 1.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52
표 4- 2. 연도별 대두 시장접근물량(기본물량) 운영현황	53
표 4- 3. 콩나물 콩 수급현황(2005-2007년)	53
표 4- 4. 녹두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55
표 4- 5. 팥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56
표 4- 6. 국영무역대상 북한산 농산물의 국내유통(대두, 녹두, 팥) ..	58
표 4- 7.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소비자 조사 개요	61
표 4- 8. 북한산 농림수산물 구입 경험자 비중	61
표 4- 9. 북한산 농림산물의 품목별 구매실태	62
표 4-10. 북한산 농림수산물 구입처	62
표 4-11.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가격 평가	64
표 4-12.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안전성, 이미지 평가	64
표 4-13. 북한산 농산물 향후 구입 의향	64

제5장

표 5- 1. 육로운송을 통한 북한산 농산물의 운송비용 절감액 추정 ..	68
--	----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및 유통실태 조사	7
--------------------------------------	---

제2장

그림 2- 1. 남북한 교역 동향	10
그림 2- 2.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13

제3장

그림 3- 1.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절차	37
그림 3- 2.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승인 절차	39
그림 3- 3. 국영무역대상품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 인도 품목의 반입체계	41

제4장

그림 4- 1. 북한산 대두 유통경로	54
그림 4- 2. 북한산 녹두 유통경로	56
그림 4- 3. 북한산 팥 유통경로	58
그림 4- 4.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구입 동기	63

1.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말 대북 포용정책을 표방했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래 남북한 간에 경제교류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교류에 대한 남북한 양측의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남북 경제교류는 상업적 차원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적인 경제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¹ 북한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대북 경제지원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남북 경제교류의 건전성을 증진시키고 북한 경제구조의 재편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상업적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간 교역 확대와 관련해 농업부문에서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이다.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반출의 경우 반출품목이 주로 지원물자와 위탁임가공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어 농림산물의 상업적 교역과 큰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산 상품 반입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으로부터의 반입품목은 주로 임가공 완제품과 북한산 농림수산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¹ 2007년까지 정부의 비료지원, 식량차관지원, 에너지지원 등과 함께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진 여러 차원의 물자지원이 남북 간 교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에 대해 특수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중시하는 대북정책이 취해 온 입장과, 우리 농산물 시장의 안정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중시하는 농업정책이 취한 입장이 양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진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경제통합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정책 목표는 남북한 간의 화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경제공동체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남북한 간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남북한 간의 교역을 민족 내부거래로 간주해 기본적으로 자유화를 추구하고 수입관세와 부과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내 농산물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향상과 보전을 지향하는 농업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해외 농산물의 수입과 같은 맥락에서 국내 농가경제의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산 농림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제한하는 데 두고 있다. 정책수단으로는 반입승인을 요하는 농림산물 품목을 지정해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을 관리하거나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해 양립되는 목표와 입장이 존재한다. 그 이유로 관련된 정책기조와 수단이 뚜렷하게 정립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관련 제도가 다소 부족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여러 다른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정책적 선택이 필요할 경우 북한산 상품의 반입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편, 국내 생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강조되거나 제3국산 농림산물의 위장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북한경제가 회복되고 남북한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남북한 간 교역규모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며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도 크게 증대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을 준비하는 관련기업, 북한 당국, 우리측 농민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해 미리 대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남북한 관계와 남북한 농림산물 교역규모에 부응하는 반입관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반입된 북한산 농림산물의 국내 유통과 소비 실태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북한산 농림산물의 국내 유통과 소비가 국내산 및 다른 수입산과 크게 차별화된 경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산 농림산물의 유통과 소비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문제는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산 농림산물 유통업자와 소비자 면접조사를 통해 문제와 개선방향을 도출해 볼 필요는 있다.

2. 연구 목적과 활용

이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통계자료를 정리해 품목별 반입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 제도를 분석한다. 셋째,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 실태를 품목군 별로 파악하는 한편 문제점을 분석한다. 넷째, 반입된 북한산 농림산물의 국내 유통실태와 소비 실태를 파악해 반입과 관련된 문제를 도출한다. 다섯째,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농업부문의 기본 입장을 검토하고 농업부문의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정책방향하에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현행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북한산 농림산물

4 서론

을 반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기업과 관련된 농림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에게 정책 방향을 제시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북한산 농림산물 국내 유통 및 소비 실태를 정리해 농림산물 반입 기업과 정책 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 북한측과 농림산물 반출입 관련 협상을 추진할 경우 우리측 제안과 요구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3. 주요 선행연구의 검토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에서 농림산물 교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중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김영훈의 연구가 있다(남북 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999). 이 연구는 농업교류협력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농림산물 교역에 관한 각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남북한 간의 농림산물 교역 현황을 품목군과 물량 측면에서 조사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 전반적인 문제점과 교역 활성화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서 대표적인 것은 김운근(남북한 농업부문 교역 및 협력방안 연구, 1994)과 유재현(북한의 농림산물교역실태와 남북한 교역활성화 방안 연구, 1999)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연구 수행 당시 남북한 관계 증진 분위기를 반영해 주로 교역확대 위주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확대의 역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정책 적용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남북한 간 물자교역의 미시적 경험을 실증적으로 조사해 정리한 연구로 김성훈의 연구(남북 경험의 현장, 1996)가 있다. 이 연구는 무역업자들이 남북교역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는 무역업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담당자의 입장과 정책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 남북경협이 충분한 제도적 틀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었으며, 그것이 남북경협 발전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남북경협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리한 연구로 조동호(남북경협의 제도화 방안, 200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서,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이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북한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이 자연스럽게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이 함께 풀어 제도화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집중하고 있으나 남한 내에서 제도화를 강화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각론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있다.

남북한 간 농림산물 교역확대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제3국산 농림산물의 위장반입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최세균의 연구(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제도 개선방향, 1996)가 있다. 이 연구는 감추어져 있던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해 위장반입문제의 폐해를 지적했다는 점과 원산지 증명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범위가 원산지증명제도에 한정되어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참고할 수는 없다.

농림산물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관리방식과 그 개선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임정빈의 연구(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개선방향, 2000)가 있다. 이 연구는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이 없으나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에 다양한 수입관리방식이 적용 가능한지를 참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의 우리나라 유통실태와 대응방안을 정리한 것으로 허상선(중국산 수입농산물의 국내유통실태와 한국농업의 대응방안, 199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비록 북한농산물은 아니지만 큰 범주로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산 농산물의 국내유통실태 조사에 참고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 품목의 수입현황과 수입실적, 주요 유통경로, 품목별 중국산의 유통량 비중 등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산 농산물 반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해 반입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한 김영훈의 연구(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2001)도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여건과 실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련 정책과 문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와 문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정책기조와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북한산 농산물 반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다.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 북한산 농산물의 국내 유통 및 소비 실태도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현장감 있게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4. 연구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추이와 반입 실태, 북한산 농림산물의 국내 유통과 소비 실태, 관련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추이 부분은 주요 반입품목을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정리했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실태는 제도적인 고찰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을 둘러싼 기본입장과 관련제도, 그리고 반입관리 방식 등을 고찰해 정리했다. 북한산 농림산물 국내 유통은 국영무역대상 품목과 일반 품목으로 구분해 고찰했으며, 소비 실태는 소비자 조사를 토대로 구매 실태와 선호를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방향은 반입관리제도와 관리방식의 개선과 국내 유통 단계의 개선으로 구분해 정리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관련 제도 및 관리방식에 대한 문헌자료 분석과 함께 면접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조사 대상 품목은 북한산 농림산물의 현행 반입 실태를 참조해 국영무역대상 품목과 반입규모가 비교적 큰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최근 5년간 반입금액, 국내 시장 점유율, 반입한도물량 운영 등을 고려해 품목을 선정해 조사를 추진했다. 조사대상 품목은 대두, 녹두, 팥(이상 국영무역대상품목) 고사리, 표고, 송이 등이다.

면접조사는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단계와 국내유통단계를 구분해 통일

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담당자와 반입업체, 유통업체 관계자, 그리고 북한산 농림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관련 제도와 반입관리방식을 정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대북 물자 반출입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검토했으며 이와 관련된 고시와 공고 등도 분석했다. 한편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경험 및 교역 관련 합의서도 분석했다. 북한과 직접 교역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부터는 농림산물 반입 계약 시 의향서와 합의서 등을 입수해 검토했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현황에 관해서는 통일부, 한국무역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정리, 분석했다. 이외에 북한산 농림산물 교역업체 관계자와 농림산물유통공사 전문가를 초청해 협의회를 개최하거나 면담조사를 통해 반입과 유통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림 1-1.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및 유통실태 조사

구분	반입 및 유통 경로	주요 조사대상기관
반입	접촉·상담·계약	반입업체
	(반입승인신청) (반입승인)	농림수산물식품부, 통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반입업체
	수송·법적절차	통일부, 반입업체
	통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반입업체
국내유통	(인수도·구매)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소비자

주: ()는 반입승인대상품목에 해당.

1. 남북한 교역 동향

1.1 교역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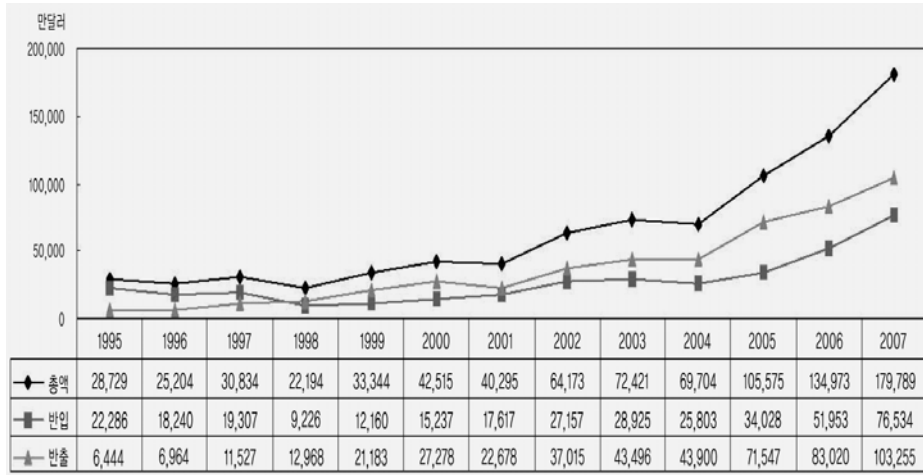
오랜 기간 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남북한 교역은 1988년 ‘7.7선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개시되어 1988년 ‘대북경제개방조치,’ 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추진되기 시작했다. 교역 시작 초기에는 교역규모가 2,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4년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대폭적인 증가를 이루어 2007년에는 17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1989년에 비해 약 96배 증가한 수치이다. 교역 건수 또한 2000년 7,394건에서 2007년 51,758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특히 남북 간의 위탁가공교역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자 반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대북 반출 품목 또한 2000년 527개에서 2007년 803개로 늘어나 반출 품목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남북 사이의 무역액은 중국을 제외할 경우 북한 전체 무역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교역액 포함 시 2007년 북한의 총 무역액은 약 47억 달러인데, 이 중 남북교역액이 18억 달러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초 남북 교역액이 북한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38%에 달하는 남북 간의 교역은

10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추이

비약적인 증가를 이룬 것으로 남북교역이 북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1. 남북한 교역 동향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표 2-1. 남북 교역 건수 추이

단위: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반입	3,952	4,720	5,023	6,356	5,940	9,337	16,412	25,027	88,340
반출	3,442	3,034	3,773	4,853	6,953	11,878	17,039	26,731	90,163
계	7,394	7,754	8,796	11,209	12,893	21,215	33,451	51,758	178,503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표 2-2. 남북 교역 품목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반입	204	201	204	186	202	381	421	450	3,247
반출	527	492	495	530	575	712	697	803	6,402
계	731	693	699	716	777	1,093	1,118	1,253	9,649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표 2-3. 북한의 대외 무역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남북교역(A)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북한 전체무역(B)	2,397	2,637	2,901	3,115	3,554	4,058	4,346	4,739
점유율(A/B)	17.7	15.2	22.1	23.2	19.6	25.9	30.9	37.9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KOTRA(<http://www.globalwindow.org>)

1.2 교역품목구조

2005~2007년 남한의 대북 반출 연평균액은 54,172만 달러, 대북 반입 연평균액은 85,940만 달러로 반입, 반출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남북교역을 살펴보면 남한은 주로 농림수산물, 광산물, 섬유류, 철강·금속제품을 북한에서 반입했으며,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기계류를 반출했다. 이러한 품목구조는 최근 3년 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반입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섬유류,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순이다. 섬유제품의 경우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비중이 높아져 2007년 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수산물 또한 반입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품목은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주류를 이루던 초기와는 달리, 위탁가공교역이 시작됨에 따라 섬유류(원부자재)의 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식량, 비료 등의 지원 증가로 화학공업제품과 농림수산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주요 반출품목의 비중은 직물 등 섬유류(20.7%), 비료 등 화학공업제품(19.7%), 쌀 등 농림수산물(13.3%), 건설 중장비 등 기계류(13.2%) 순이다.

표 2-4. 북한산 반입품목 구조

단위: 천 달러, %

품목	2005		2006		200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112,609	33.1	137,855	26.5	184,189	24.1
광산물	29,238	8.6	59,733	11.5	120,796	15.8
화학공업제품	544	0.2	1,868	0.4	4,589	0.6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1,674	0.5	3,803	0.7	4,764	0.6
섬유류	120,294	35.4	14,807	27.9	190,541	24.8
생활용품	6,025	1.8	15,511	3	18,912	2.5
철강·금속제품	44,301	13.0	110,147	21.2	165,938	21.7
기계류	10,438	3.1	22,702	4.4	35,887	4.7
전자전기제품	14,460	4.2	21,997	4.2	38,335	5
잡제품	698	0.2	1,118	0.2	1,395	0.2
총계	340,281	100	519,539	100	765,346	100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KOTRA(<http://www.globalwindow.org>)

표 2-5. 남한산 반출품목 구조

단위: 천 달러, %

품목	2005		2006		200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144,644	20.2	213,893	25.8	137,382	13.3
광산물	31,740	4.4	36,873	4.4	79,443	7.7
화학공업제품	202,655	28.3	184,821	22.3	203,000	19.7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10,973	1.5	9,883	1.2	21,800	2.1
섬유류	87,203	12.2	104,781	12.6	214,149	20.7
생활용품	12,634	1.8	19,447	2.3	32,688	3.2
철강·금속제품	67,855	9.5	95,909	11.6	97,123	9.4
기계류	114,888	16.1	102,395	12.3	136,290	13.2
전자전기제품	25,026	4.9	57,137	6.9	103,012	10
잡제품	7,857	1.1	5,062	0.6	7,662	0.7
총계	715,472	100	830,200	100	1,032,550	100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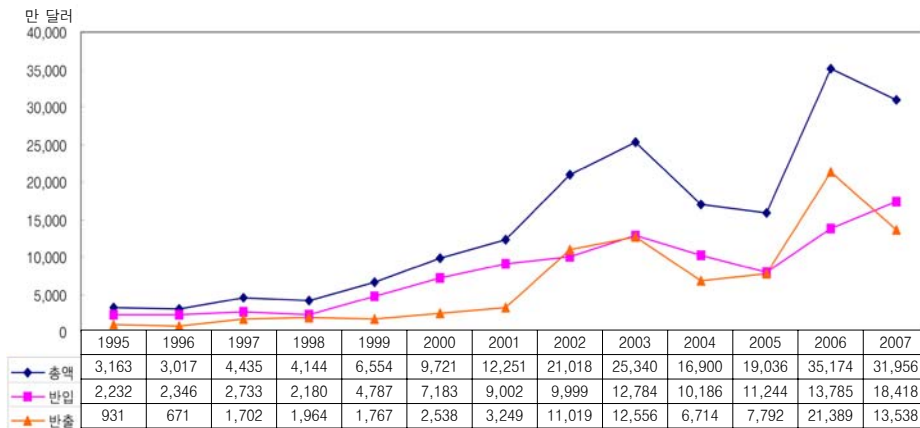
KOTRA(<http://www.globalwindow.org>)

2. 북한산 농림산물 반출입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은 1989년 235만 달러에서 2007년 3억 1,956만 달러로 지난 18년 동안 교역규모가 약 131배 증가했다. 특히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반입은 1995년 2,232만 달러에서 2007년에는 18,418만 달러로 7.8배 증가해 전체 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림산물 반출은 2002년부터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2002년부터 대북 쌀 차관이 시작되어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쌀이 북한에 반출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반입액은 18,418만 달러로 전체 반입액의 24.1%를 차지했다. 북한산 반입상품 대비 농림산물 반입 비중이 2000년 47.1%, 2001년 51.1%, 2003년 44.1%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감소한 것이지만 이는 위탁가공교역의 증가로 인한 섬유류의 대폭적인 반입에 기인한 것으로 농림산물의 반입액은 오히려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농림수산물이 전체 반입액의 10%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괄목할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각월호.

14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추이

표 2-6. 북한산 반입상품 대비 농림산물 반입 비중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품목 반입실적	152,373	176,170	271,515	289,252	258,039	340,281	519,539	765,346
농림산물 반입실적	71,834	90,028	99,993	127,846	101,862	112,442	137,855	184,189
비율	47.1	51.1	36.8	44.1	39.5	33.1	26.5	24.1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각월호.

남북 교역 초기에는 북한으로부터 감자 등 식량을 반입하기도 했으나 북한이 식량난을 겪으며 식량 반입은 중지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반입 품목 또한 대폭 감소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매년 30여 종의 농림산물을 반입하고 있으며, 이 중 반입규모가 연평균 500만 달러를 넘는 품목이 3-4개가 되며, 마늘과 송이버섯의 경우 반입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이다. 농산물 반입업체는 1989년 교역 초기에는 8개사에 불과했으나 1995년 100여 개, 2002년 419개로 대폭 증가했다.

3. 북한산 농림산물 품목별 반입동향

북한은 농업생산물이 다양하지 않다. 게다가 식량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남 반출이 가능한 농림산물은 한정되어 있다. 현재 농림산물 주요 반입 품목은 매년 30~40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주요 반입 품목은 고사리, 표고, 기타버섯, 기타채소, 호도, 송이, 들깨, 대두, 팥, 호박 등이다. 이들 품목의 반입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주요 10개 반입품목의 반입 금액이 2002년 1,947만 달러에서 2007년에는 5,062만 달러로 2.5배 증가했다.

고사리는 2000년 208만 달러 반입되었으나 2007년 967만 달러 반입되어 약 4.6배 증가했다. 송이버섯은 2000년 130만 달러에서 2007년 1,046만 달러로 8.0배, 표고버섯은 2000년 105만 달러에서 2007년 685만 달러로 6.5배 반입 증가했다. 주요 품목의 반입액 증가는 남북교류 활성화로 인한 측면도 있지만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우호적 인식으로 인한 수요 증대 또한 반입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1백만 달러 이상 반입된 품목은 마늘, 기타채소, 고사리, 송이버섯, 표고버섯, 기타 버섯류, 호도, 식물성 한약재로 총 8가지 품목이다. 2000년에 1백만 달러 이상 반입된 품목이 들깨, 고사리, 송이버섯, 표고버섯, 제조담배 이 다섯 가지 품목에 한정되어 있던 것에 비하면 대폭적인 증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7. 북한산 농림산물 주요 반입품목

단위: 천 달러

연도	주요 10개 반입품목	주요품목 반입금액	농림산물 반입금액
2002	고사리, 제조담배, 호도, 기타채소, 표고, 기타버섯, 송이, 잎담배, 들깨, 대두	18,472	29,371
2003	기타버섯, 고사리, 기타채소, 호도, 표고, 제조담배, 녹두, 기타과실, 대두, 고추	28,140	36,922
2004	고사리, 기타버섯, 표고, 기타채소, 호도, 기타과실, 제조담배, 들깨, 송이, 대두	24,870	33,652
2005	표고, 고사리, 기타버섯, 기타채소, 호도, 송이, 잎담배, 들깨, 팥, 호박	24,028	22,407
2006	표고, 고사리, 기타채소, 기타버섯, 마늘, 송이, 호박, 인삼류, 들깨, 호도	29,670	38,291
2007	마늘, 송이, 고사리, 표고, 기타버섯, 기타채소, 호도, 들깨, 녹두, 대두	50,623	58,677

주: 한약재와 기타농산가공품은 제외.
자료: 관세청.

표 2-8. 북한산 주요 농림산물 반입규모 비교

구분		품목
규모별 구분 (2007년 기준)	50만 - 100만 달러	녹두(78), 들깨(90)
	100만 - 500만 달러	기타채소(313), 기타버섯류(358), 호도(121)
	500만 - 1,000만 달러	고사리(967), 표고버섯(685), 식물성 한약재(697)
	1,000만 달러 이상	마늘(1,356), 송이버섯(1,046)
추세별 구분 (2005 - 2007)	계속 반입	호도, 식물성 한약재, 고사리, 송이버섯, 표고버섯, 기타 버섯, 기타 채소, 대두, 녹두, 팥, 들깨, 호박
	반입 증가	대두, 녹두, 강낭콩, 들깨, 마늘, 고사리, 식물성 한약재, 제조담배

주: ()안의 숫자는 금액(만 달러).

표 2-9. 품목별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금액

단위: 천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대두	0	0	484	1,388	672	236	427	442
녹두	0	808	411	1,814	309	278	423	780
팥	0	178	225	72	505	363	378	59
강낭콩	26	17	0	0	0	0	215	293
완두	0	0	0	0	0	6	0	6
들깨	6,056	12,841	851	42	703	400	556	903
호박	0	0	0	97	282	324	946	160
마늘	0	0	0	362	0	0	1,327	13,564
기타채소	441	1,384	2,400	3,896	2,865	2,769	3,446	3,137
고사리	2,088	3,533	3,674	5,506	5,743	5,514	7,797	9,671
송이버섯	1,305	667	1,012	497	702	1,144	1,029	10,466
표고버섯	1,056	2,267	1,435	2,167	4,307	7,541	10,711	6,856
기타버섯류	575	443	1,085	6,627	5,241	3,765	2,573	3,589
호도	3,810	2,068	2,994	2,614	2,773	1,547	521	1,215
고추	0	368	207	432	0	0	2	6
식물성한약재	3,538	4,355	5,142	4,009	2,195	2,360	3,983	6,974
기타과실	0	239	315	1,748	1,864	202	15	0
인삼류	60	138	13	35	12	7	764	0
잎담배	904	1,193	976	367	405	661	0	0
제조담배	5,367	2,396	3,562	1,948	0	0	60	62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월호.

무역협회(<http://interkoretrade.kita.net>)

2007년 주요 품목별 반입액을 보면 기타채소, 송이버섯, 고사리, 식물성 한약재, 표고버섯 등 5개 품목이 농산물 반입액의 절반 이상(78.5%)를 점유했다. 기타채소 점유율이 22%로 가장 높으며, 송이버섯 17.2%, 고사리 15.7%, 식물성 한약재 11.5%, 표고버섯 11.3% 순이다. 마늘의 경우 2000-2005년(2003년 제외)에는 반입되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 남한산 마늘을 북측에 보내어 이를 가공 후 다시 국내에 유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반입액이 2006년 132만 달러에서 2007년 1,256만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3.1 대두

북한산 대두는 국내수급, 국내생산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국영무역방식으로 수입 관리되어 국내 반입 시 전량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인수해 판매관리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위장 반입 등 무분별한 국내반입을 제한하기 위해 연간 반입한도 물량이 2,000톤으로 정해져 있다.

표 2-10. 대두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톤,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북한 (A)	0 (0)	0 (0)	484 (930)	1,388 (2,563)	672 (1,071)	236 (400)	427 (798)	442 (637)
	중국 (B)	8,447 (43,400)	8,513 (46,872)	8,309 (52,326)	9,458 (53,325)	14,075 (64,709)	20,456 (79,484)	15,682 (39,580)	2,815 (8,443)
	미국 (C)	291,594 (1,320,117)	259,655 (1,198,605)	271,123 (1,228,575)	322,157 (1,189,249)	373,703 (997,572)	235,240 (790,674)	158,267 (526,366)	130,587 (407,653)
	전체 (D)	328,236 (1,492,227)	289,400 (1,355,213)	318,479 (1,475,888)	500,590 (1,510,885)	480,972 (1,284,561)	391,685 (1,330,601)	321,807 (1,127,676)	298,854 (904,808)
비중 (금액)	A/D	0	0	0.2	0.3	0.1	0.1	0.1	0.1
	B/D	2.6	2.9	2.6	2.4	2.9	5.2	4.9	0.9
	C/D	88.8	89.7	85.1	80.4	77.7	60.1	49.2	43.7

주: 대두유 제외.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2-11.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대두 반입 비중

단위: 톤, %

		2004	2005	2006
반입(A)		1,071	400	798
수입(B)		1,283,490	1,330,201	1,126,878
국내수요량(C)		1,284,015	1,330,697	1,127,673
반입	A/C	0.08	0.03	0.07
	B/C	99.96	99.96	99.93

주: 국내수요량=국내생산량+수입+반입-수출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농림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각년호.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무역협회(<http://interkoreatrade.kita.net>)

북한산 대두는 2000년, 2001년에는 반입되지 않았지만 증가세를 이루어 2003년 138만 달러, 2004년 67만 달러, 2007년 44만 달러 반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수입량의 0.3%, 0.1%, 0.1%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 대두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

대두 수입은 북한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과 중국산 대두가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는 두 국가에서 수입되는 대두가 전체 수입액의 91.4%를 차지했으나 200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두의 국내 생산량, 수입량, 반입량 및 수출량을 기준으로 대두의 국내 수요량을 산출했다. 그 결과 국내 수요량 대비 북한산 대두 반입은 2004년 0.08%, 2005년 0.03%, 2006년 0.07%로 반입된 북한산 대두가 국내 수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미세함을 알 수 있다.

3.2 녹두

북한산 녹두 또한 대두와 마찬가지로 국영무역방식으로 수입관리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국내 반입 시 전량 공사에서 인수해 판매관리 하고 있다. 연간 한도물량은 1,000톤으로 정해져 있다.

북한산 녹두는 2000년에는 수입되지 않았으나 2001년 수입액이 급증하기 시작해 2003년에는 전체 녹두 수입액의 67.3%를 차지했으며 2007년 현재 78만 달러 수입되어 전체 녹두 수입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산 녹두 반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산 녹두가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산 녹두 수입은 2007년 기준 전체 녹두 수입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2. 녹두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톤,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북한 (A)	0 (0)	808 (1,100)	411 (700)	1,814 (3,300)	309 (500)	278 (300)	423 (499)	780 (800)
	중국 (B)	1,018 (6,057)	914 (6,468)	1,004 (7,232)	867 (6,671)	830 (6,967)	1,462 (10,716)	2,238 (5,198)	1,235 (4,040)
	전체 (C)	1,182 (7,174)	1,827 (8,125)	1,419 (8,022)	2,693 (10,015)	1,148 (7,489)	1,757 (11,226)	2,665 (5,719)	2,022 (4,844)
비중 (금액)	A/C	0	44.2	28.9	67.3	26.9	15.8	15.8	38.5
	B/C	86.1	50.0	70.7	32.1	72.2	83.2	83.9	61.0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2-13.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녹두 반입 비중

단위: 톤, %

		2004	2005	2006
반입(A)		500	300	499
수입(B)		6,989	10,926	5,220
국내수요량(C)		8,823	12,708	7,221
비중	A/C	5.7	2.4	6.9
	B/C	79.2	86.0	72.3

주: 국내수요량=국내생산량+수입+반입-수출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농림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호.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무역협회(<http://interkoreatrade.kita.net>)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녹두 반입 비중을 살펴보면 2004년 5.7%, 2005년 2.4%, 2006년 6.9%이다. 이는 같은 국영무역품목인 대두가 0.06% (2004~2006년 평균), 팔이 1.6%(2004~2006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녹두의 경우 이미 북한으로부터 많은 물량이 반입되고 있지만 민감품목이기 때문에 국내시장을 고려한 반입이 필수적이며, 반입 시 정선상태 불량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품질제고 또한 요구된다.

3.3 팔

북한산 팔은 앞의 녹두, 대두와 마찬가지로 국영무역품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 반입 시 전량 공사에서 인수해 판매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한도물량은 1,000톤이다. 북한산 팔은 2000년, 2001년에는 반입되지 않았지만 2002년부터 반입되기 시작해 2004년 50만 달러, 2006년 37만 달러, 2007년 현재 5만 달러 반입되어 전체 팔 수입액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산 팔 수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산 팔이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산 팔의 수입은 2007년 기준 전체 팔 수입액의 99.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4. 팔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톤,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북한 (A)	0 (0)	0 (0)	225 (320)	72 (185)	505 (628)	363 (461)	378 (677)	59 (100)
	중국 (B)	12,480 (27,566)	12,699 (18,880)	7,722 (24,450)	12,302 (28,593)	19,441 (32,036)	17,275 (28,796)	13,460 (27,118)	21,025 (36,022)
	전체 (C)	12,561 (27,621)	12,893 (29,035)	8,115 (24,813)	13,504 (29,935)	20,222 (32,262)	17,686 (29,432)	14,169 (28,072)	21,180 (36,142)
비중 (금액)	A/C	0	0	2.8	0.5	2.5	2.1	2.7	0.3
	B/C	99.4	98.3	95.2	91.1	96.1	97.7	95.0	99.3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2-15.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팔 반입 비중

단위: 톤, %

		2004	2005	2006
반입(A)		628	461	677
수입(B)		32,078	28,804	27,611
국내수요량(C)		40,561	34,676	33,097
비중	A/C	1.5	1.3	2.0
	B/C	79.1	83.1	83.4

주: 국내수요량=국내생산량+수입+반입-수출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농림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호.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무역협회(<http://interkoreatrade.kita.net>)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팔의 반입 비중을 살펴보면 2004년 1.5%, 2005년 1.3%, 2006년 2.0%이다. 이는 같은 국영무역 품목인 녹두의 5% (2004~2006년 평균)보다는 낮지만 0.06%인 대두(2004~2006년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3.4 송이버섯

북한산 송이버섯 반입은 2000년 130만 달러에서 시작해 2003년 49만 달러까지 감소했다가 증가추세를 이루어 2007년에는 1,04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대비 21배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2007년의 북한산 송이버섯 반입액은 송이버섯 전체 수입금액의 67.9%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2003년 9.5%와 비교할 때 괄목할만한 반입 증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2000~2006년까지 송이버섯 수입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송이버섯 수입 금액의 평균 81.6%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7년 북한산 송이버섯의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며 중국산 송이버섯의 수입비중은 32.1%로 감소했다. 이는 중국산과 비교할 때 북한산 송이버섯의 향,

질감 등이 국산과 유사해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송이버섯의 반입 비중을 살펴보면 2004년 2.0%, 2005년 2.3%, 2006년 1.4%이다. 이는 표고버섯(3.6%)보다는 낮지만 대두(0.06%), 녹두(5%), 팥(1.6%) 등의 국영무역품목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표 2-16. 송이버섯 수입 동향

단위: 천불, 톤,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북한 (A)	1,305 (33.4)	708 (18.0)	1,012 (30.3)	497 (11.7)	702 (11.1)	1,144 (23.3)	1,029 (11.7)	10,466 (301)
	중국 (B)	3,820 (196)	3,331 (227)	3,390 (208)	4,568 (289)	4,082 (255)	5,586 (369)	5,721 (358)	4,958 (321)
	전체 (C)	5,148 (230)	4,042 (245)	4,428 (239)	5,258 (311)	4,815 (268)	6,748 (410)	6,805 (371)	15,423 (622)
비중 (금액)	A/C	25.3	17.5	22.9	9.5	14.6	17.0	15.1	67.9
	B/C	74.2	82.4	76.6	86.9	84.8	82.8	84.1	32.1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무역협회(<http://interkoreatrade.kita.net>)

표 2-17.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송이 반입 비중

단위: 톤, %

		2004	2005	2006
반입(A)		11	23	11
수입(B)		257	386	360
국내수요량(C)		540	990	656
비중	A/C	2.0	2.3	1.7
	B/C	47.6	39.0	54.9

주: 국내수요량=국내생산량+수입+반입-수출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농림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호.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무역협회(<http://interkoreatrade.kita.net>)

3.5 고사리

북한산 고사리 반입은 2000년 208만 달러에서 시작해 2007년에는 967만 달러로 반입금액이 8년 사이에 약 4.6배 증가했다. 이는 고사리 전체 수입금액 2,242만 달러 가운데 29.8%를 차지하는 것으로 2000년 11.6%와 비교할 때 괄목할만한 반입 증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사리 수입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기준 중국산 고사리 수입이 남한 전체 고사리 수입의 70.1%를 차지하고 있지만 북한산 고사리 반입을 제외할 경우 수입량의 약 99%를 차지한다.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고사리 반입 비중을 살펴보면 2004년 12.6%, 2005년 16.1%, 2006년 17.4%이다. 이는 국영무역 품목인 녹두(5.0%), 대두(0.06%), 팥(1.6%)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송이버섯(2.0%), 들깨(4.9%)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아직까지 수입은 중국산 고사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산은 무관세가 적용되어 반입단가가 중국산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산 고사리 반입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고사리가 많이 생산되고 다른 여건이 허락된다면 북한산이 중국산을 지속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8. 고사리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톤,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북한 (A)	2,088 (502)	3,533 (867)	3,674 (859)	5,506 (1,293)	5,743 (1,296)	5,514 (1,217)	7,797 (1,414)	9,671 (1,463)
	중국 (B)	15,819 (3,259)	14,775 (3,144)	16,935 (3,551)	16,196 (3,340)	16,157 (3,190)	18,385 (3,187)	18,495 (2,645)	22,734 (3,103)
	전체 (C)	17,973 (3,777)	18,320 (4,014)	21,319 (4,576)	21,702 (4,633)	21,901 (4,486)	23,908 (4,407)	26,298 (4,065)	32,422 (4,566)
비중 (금액)	A/C	11.6	19.2	17.2	25.3	26.2	23.0	29.6	29.8
	B/C	88.0	80.6	79.4	74.6	73.7	76.8	70.3	70.1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2-19.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고사리 반입 비중

단위: 톤, %

		2004	2005	2006
반입(A)		1,296	1,217	1,414
수입(B)		5,782	3,190	2,651
국내수요량(C)		10,264	7,561	8,114
비중	A/C	12.6	16.1	17.4
	B/C	56.3	42.2	32.7

주: 국내수요량=국내생산량+수입+반입-수출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농림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호.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무역협회(<http://interkoreatrade.kita.net>)

3.6 표고버섯

북한산 표고버섯의 반입은 2000년 105만 달러에서 2007년 685만 달러로 8년 사이에 6.5배 증가했다. 이는 표고버섯 전체 수입액 가운데 43.2%를 차지하는 것으로 2005년 57.4%, 2006년 59.0%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2000년 초반의 27.8%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00년에는 중국산 표고버섯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72%를 차지했지만 북한산 표고버섯의 수입 증대로 인해 비중이 2006년 40.8%까지 낮아졌다.

국내수요량에서 북한산 표고버섯 반입 비중을 살펴보면 2004년 2.7%, 2005년 3.8%, 2006년 4.4%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07년은 감소). 북한산 표고버섯의 반입 단가가 중국산의 2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입이 증대되고 국내 소비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국내 소비자가 중국산보다는 북한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표 2-20. 표고버섯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톤,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북한 (A)	1,056 (233)	2,267 (512)	1,435 (325)	2,167 (469)	4,307 (830)	7,541 (1,291)	10,711 (1,396)	6,856 (902)
	중국 (B)	2,733 (1,137)	1,905 (862)	2,523 (1,238)	3,828 (1,926)	5,091 (3,068)	5,529 (3,783)	7,402 (4,215)	8,983 (5,475)
	전체 (C)	3,789 (1,370)	4,176 (1,374)	3,994 (1,565)	6,003 (2,395)	9,480 (3,908)	13,129 (5,087)	18,127 (5,612)	15,854 (6,378)
비중 (금액)	A/C	27.8	54.2	35.9	36.0	45.4	57.4	59.0	43.2
	B/C	72.1	45.6	63.1	63.7	53.7	42.1	40.8	56.6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2-21.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표고버섯 반입 비중

		2004	2005	2006
반입(A)		830	1,291	1,396
수입(B)		3,078	6,378	4,216
국내수요량(C)		29,991	33,859	31,051
비중	A/C	2.7	3.8	4.4
	B/C	10.2	18.8	13.5

주: 수입량 계산 시 조제저장처리된 것은 제외
표고(신선)의 무게는 표고(건조) 1/7.3으로 환산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농림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각년호.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무역협회(<http://interkoreatrade.kita.net>)

3.7 들깨

북한산 들깨의 반입은 2000년과 2001년에 최대로 증가하여 남한 전체 들깨 수입금액에서 9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02년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 최근 들어서는 90만 달러 수준의 반입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들깨 반입 비중은 2004년 4.9%, 2005년 2.9%, 2006년 4.0%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북한산 들깨의 반입이 급감한 것은 2002년부터 북한산 들깨가 반입규제 품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들깨 수입 금액의 55.8%를 차지하던 북한산 들깨 반입은 2007년 현재 3.5%에 그치고 있으며, 북한산 들깨 반입 감소로 인해 중국산이 수입이 다시 증가하여 이제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표 2-22. 들깨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톤,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북한 (A)	6,056 (8,533)	12,841 (22,647)	851 (1,437)	42 (79)	703 (1,153)	400 (689)	556 (952)	903 (809)
	중국 (B)	4,788 (9,949)	1,251 (2,724)	8,604 (18,736)	11,448 (24,026)	11,210 (23,599)	12,453 (24,069)	13,299 (23,607)	23,477 (29,136)
	전체 (C)	10,844 (18,482)	14,092 (25,371)	9,456 (20,173)	11,490 (24,105)	11,913 (23,599)	12,853 (24,069)	14,855 (23,607)	24,380 (29,136)
비중 (금액)	A/C	55.8	91.1	9.0	0.4	5.9	3.1	3.7	3.7
	B/C	44.2	8.9	91.0	99.6	94.1	96.9	96.3	96.3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2-23. 국내수요량 대비 북한산 들깨 반입 비중

단위: 톤, %

		2004	2005	2006
반입(A)		1,153	689	952
수입(B)		22,446	23,380	22,655
국내수요량(C)		23,599	24,069	23,607
비중	A/C	4.9	2.9	4.0
	B/C	95.1	97.1	96.0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농림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각년호.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무역협회(<http://interkoreatrade.kita.net>)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실태

- 제도와 문제 -

1.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정책과 제도

1.1. 남북 간 농산물 반출입정책의 기본입장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 및 용역의 반출과 반입을 의미한다. 이 법은 또한 남북 간 반출입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북 간 물품 및 용역의 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 반출입의 편의상 구분은 달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상업적 형태의 교역으로서 단순교역, 연계교역, 임가공교역 등이 있으며, 비상업적 교역의 형태로서 지원이 있다.

단순교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불수단을 지불하고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는 형태이며 남북한 간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출입 형태이다. 연계교역은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교역형태로서 물물교환(Ba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등이 포함된다. 임가공교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해야 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출하고 이를 가공한 후 가공제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과, 가공임을 취하기 위해 가공해야 할 원부자재를 반입하고 가공제품을 반출하는 수탁가공교역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한편 지원은 대부분 남한에서 북한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식량의 차관지원과 정

부 및 민간의 대북 무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산물의 상업적 교역에 초점을 맞춘다면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이 우리의 주요 관심 분야가 된다. 우리나라는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에 대해 특수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산 반입 확대와 다른 편으로는 북한산 반입 관리라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입장은 대북정책과 농업정책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 정책의 기본입장 차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정책기조와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품목 수와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제도화에 따른 문제는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오히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2. 대북정책의 기본입장과 관련제도

우리나라 대북정책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신뢰를 구축해 우선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경제교류협력 분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경제 분야에서 대북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최대한 많은 교류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발전을 유도하며,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기본입장은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즉,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에 내국 간 거래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남북 간 교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고려를 기초로 하고 있다.

표 3-1. 농산물 반출입에 대한 대북정책과 농업정책의 입장

	대북정책	농업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간 화해와 신뢰 확대 -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 남북한 간 교역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경제의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 -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 관리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간 교역을 민족내부 거래로 간주해 관세와 부과금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승인을 요하는 농림산물 품목을 지정해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을 관리

우선 통일비용보다는 분단비용이 더욱 크므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고려가 있다. 또한 현재 북한과의 모든 접촉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의 경우에도 국내 농가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있으나, 대북정책의 목표를 달성해 분단비용이 줄어든다면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을 내국 간 거래로 간주해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대북정책의 기본입장을 남북한 상품교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정책의 기본입장은 여러 남북관계 법규에 구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 남북한 교역에 관한 대북정책의 기본입장이 담겨 있는 조항이 있다.

1.2.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남북한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제15조²와 16조³에서는 남북한 간 교역을 내국 간 교역으로 선언하고 있

²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

다. 서문은 남북한 관계를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 3-2. 남북 간 반출입 관련 제도

법 규		내 용	조 항
대북정책 입 장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한 관계를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민족내부교류로 규정	서문 제15조
	남북교류협력법	남북 간 ‘반출입’을 대외 ‘수출입’과 구별 북한산 물품 반입에 대해 관세, 부과금 면제	제2조 제26조
	WTO 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	남북한 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	제5조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승인을 요하는 물품 이외의 북한산 물품의 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	제3조
농업정책 입 장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반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 185개를 지정해 반입을 관리(농림산물은 174개 품목)	제3조

기본합의서 서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은 남북한이 화해 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회복과 평화정착을 이룩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접근하려는 기본구상을 반영한 것이다. 기본합의서는 평화정착만을 목표로 하고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통일원, 1992).

기본합의서는 이러한 토대 위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기본합의서 제15조에서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3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해 남북 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라는 의미는 남북한 간의 물자 교류가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기본합의서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규정된 민족내부교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 법에서도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해서는 내부교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반입에 대해 국제무역에서 부과되는 관세와 부과금 등을 면제하고 있다.

1.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한 규정들을 수록하고 있다. 남북교역에 관해서는 남북한 간 상품거래가 내국 간 거래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 간의 상품거래와 차별을 두고 있으며, 특히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2항에서는 남북한 간의 물품 교류를 국가 간의 경제교류인 무역과 구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2조 3항에서는 남북한 간 물자 및 용역의 거래와 이동을 국가 간 거래인 수출과 수입이라는 용어 대신 반출과 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남북교류가 상호 외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법 주체 간의 거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26조 2항에서는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산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과금을 포괄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1.2.3. 기타 법 규정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05. 12) >

이 법률도 남북한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향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에서는 남북한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은 제5조에서 남북한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 간 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무역질서 준수에 관한 국내법 조항에 북한과의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한 것은 국내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선언으로서 법률적 가치가 있다.

<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와 포괄승인규정>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해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이다. 이 고시에 의하면 북한산 상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1.3. 농업정책의 기본입장과 관련제도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은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의 원칙, 규범, 절차를 준용해 이루어지되 내국 간 거래로 인정되어 관세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상품교역을 내국 간 거래로 인정하더라도 농림산물의 경우에는 국내 반입을 급격하게 자유화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가 있다. 농림산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남한 농업부문이 가지고 있는 영세소농구조의 취약성 때문이다.

한편 농림산물은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을 자유화했을 때, 제3국산 농림산물이 북한산으로 위장해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시장에 반입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 우리나라 농림산물의 생산은 영세소농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해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면 해당 농산물의 국내생산이 급격히 위축되어 해당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산 농산물 반입과 관련해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기본입장과 정책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한다. 농업정책의 여러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국내 농가경제의 안정과 소득증대이다. 따라서 농산물 교역에 관해서는 가급적 농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지는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관리제도와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189개를 지정해(2008.9.17 개정)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반입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법률에서 남북 간 거래를 내국 간 거래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수입업자가 반입승인품목에 속해 있는 농림산물을 반입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와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입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해당 관리절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입농산물이 국영무역 대상품목이면 전량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매입하며, 기타 수입관리품목에 해당되면 그에 해당되는 절차를 거쳐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

1.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산 농림산물은 남한 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 농림산물이 국경을 통과할 때는 외국산 농림산물이 반입될 때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친다.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이외의 절차는 일반적인 수입상품의 경우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북교류협력법’에는 이와 관련해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1항은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반입 관련 당해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에 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에서는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⁴의 의결을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6조 4항에는 법률 제13조 1항 규정에 의해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 대외관계법률 준용 조항을 둠으로써 남측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취해져야 할 규제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교역에 관해 동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26조 1항).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입, 기타 경협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해 ① 외국환관리법, ② 외자도입법, ③ 한국수출입은행법, ④ 수출보험법, 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⑥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26조 3항),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 등이 출입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의 제69조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1조).

1.3.2.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교역대상 물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고시 제4조 제1항) 북한산 상품 반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⁴ 협의회 위원 : 기획재정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농식품부 등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

- ①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신고·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 ② 반입물품으로서 도서,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비디오물을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 ③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경우
- ④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해 대금의 지급 및 영수방법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
- ⑤ 반입물품으로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계기한 189개 품목(2008년 9월 17일 개정).

<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계기한 189개 반입승인품목 >

고시 지정 초기에는 제한승인 품목에 농림수산물뿐 아니라 광물과 공산품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광물과 공산품은 제외되어 자동승인품목으로 전환되었다.

현행 반입승인품목의 구성(2008년 9월말 현재)을 보면 수산물 11개 품목을 제외하고 178개 품목이 모두 농림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2000년에 추가로 반입승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꽃게는 서해교전 이후 반입승인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냉동마늘, 호박의 경우 제3국산 위장 반입이 의심되는 품목으로 추가로 지정되었다.

반입승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농림축산물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양허 관세 추천대상 품목」(2008년 기준 63품목군 205개 품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농산물은 대부분 UR 이전까지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로 수입이 제한되던 품목으로 지난 UR 협상결과 관세화 방식으로 수입개방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관세화 대상품목과 유사 및 대체관계에 있는 품목으로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들이 반

입승인대상 품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새로운 품목이 지정될 당시의 사정 등을 분석할 때 반입승인품목 지정은 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성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3. 북한산 반입승인 대상 농림산물의 반입승인 지침⁵

이 지침에 의하면 국영무역품목은 지정기관 인도조건으로 매 건별로 관계부처와 협의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승인을 요하는 품목 중 외국에서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국내수급 여건과 북한 내 생산 등을 감안해 정한 한도물량 범위 내에서는 협의 절차 없이 반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승인여부 결정하고 있다.

1.4. 반입관리의 전략적 접근과 제도화의 필요성

반입승인품목 지정은 새로운 품목이 지정될 당시의 사정 등을 분석할 때 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정책과 제도의 이중성은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도 있다. 국내 생산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거나 제3국산 농림산물의 위장반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입을 불허하고,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한 필요에 의해 특정 품목의 반입을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장점이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이중적 입장은 관련 제도 부재와 불확실성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분명치 않아 기업이 북한 농림산물 도입 계획을 수립·추진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교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간 교역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

⁵ 북한산 농산물 반입대책, 통일부, 2005.1.18.

비해 제도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기업, 북한당국, 농민에게 정책방향을 미리 제시해 대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망되는 남북한 관계와 교역규모에 부합되는 반입관리제도도 필요하다.

2.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

2.1. 반입절차

북한과의 교역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계약에 도달한 경우 물자의 반출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물자의 대북한 반출입을 위해 대외무역에서의 I/L이나 E/L에 해당하는 반출입 승인서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면 세관 통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절차는 일반 수출입 절차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림 3-1.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절차



반입물품은 물품도착 후 수입(반입)을 신고하면 신고세관의 검사 등을 거쳐 통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입신고는 일반적인 수입 화물과 동일한 상업서류 외에 추가로 해당 물품이 북한산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세관과 공인검사·검정기관은 기관별로 검사목적에 따라 상품을 검사하게 된다. 검사 후 통관절차에 들어가는데, 북한산 입증서류 제출과 관세면제 이외에 일반 수입농산물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2.2. 반입품목 구분과 반입 방식

2.2.1. 포괄승인품목

남북한 간을 이동하는 모든 물자는 물품의 소유자, 원산지, 종류 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의 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역 물품을 통일부장관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한 ‘포괄승인품목’과 개별적인 승인이 필요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승인품목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서가 없이도 세관 통관이 가능하나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반드시 승인서를 구비해야만 세관통관이 가능하다.

포괄승인품목은 법규에 의해 반입제한품목이거나 반입승인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물품으로서 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준용해 반입하게 된다.

2.2.2.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은 소비자잉여의 증가, 수입농산물의 수입선 전환효과 그리고 전반적인 남북 농업협력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과다반입에 따른 가격폭락과 국내시장의 교란요인 등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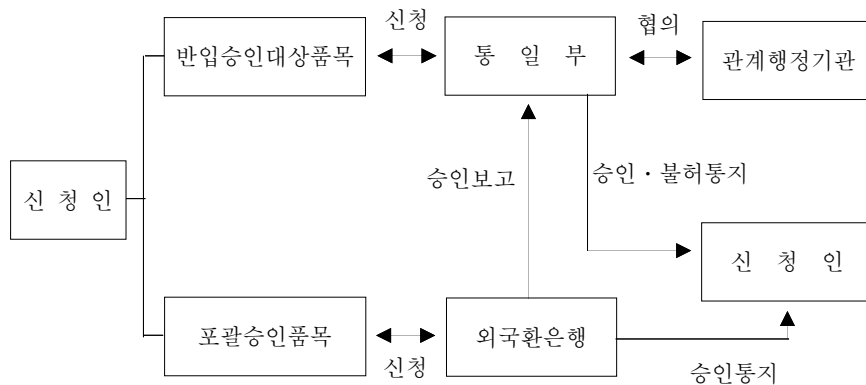
따라서 북한농산물 반입에 따른 국내시장의 교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남북한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1990년부터 반입승인대상품목 지정, 농수산물유통공사 인수도, 반입한도 설정 등을 통해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관리는 국내 생산자 보호, 국내시장 교란 방지, 원산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⁶

반입승인대상품목은 189개로 농림산물 및 그 가공품 178개와 수산물 11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품목은 다시 일반 반입승인대상품목, 국영무역대상품목, 저율관세품목 등으로 나누어지며 반입승인 및 반입절차를 달리 적용받게 된다.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경우 반입승인 절차가 부가된다. 이 경우 반입업체가 통일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통일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⁷

그림 3-2.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승인 절차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⁶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반입관리 방식은, 수입업자 선정까지는 주요 수입농산물 수입관리방식의 수입권 추천·승인제도와 유사하나 통관 이후 관리 형태는 국영무역과 유사하다.

⁷ 국영무역품목 이외의 반입한도물량 지정품목은 관계기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국영무역품목 >

국내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 크게 부족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림산물 중 북한에서 반입 가능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대상 품목은 양파, 마늘, 고추, 녹두, 팥, 생강, 메밀, 대두, 낙화생, 참깨, 천연꿀, 인삼 등 12개 품목이다.⁸

이들 품목의 반입은 국내수급상황, 반입가격, 품위, 수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된다. 또 국영무역품목 중 내수용은 전량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인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반입하도록 되어 있다.

반입 후 판매방법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내수용은 전량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인도한다. 따라서 사전에 중량, 규격, 가격 등 인수도 조건을 협의 후 반입해야 한다. 수출용(수출가공용 원료 포함)은 수출이행보증금제도를 적용하거나 관세청과 협의한 후 보세구역에서 직수출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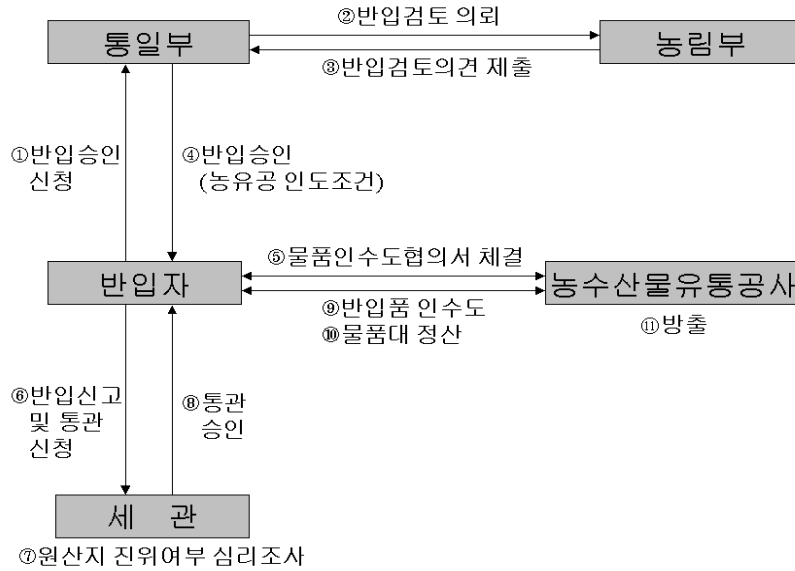
표 3-3. 국영무역대상 농림산물 반입승인 조건

내 용	지 칩	비 고
반입자선정	수출입실적, 반출입실적, 반입계획 등 반입능력 검토	
반입가격	시장접근물량 최근 3회(3개월) 평균 도입낙찰가격 최근 국제가격의 ±10% 수준	내수용
계약방식	남북 당사자 간 직접계약	
수송방식	남북한 직수송, 제3국 경유 불인정	
판매방식	전량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인수	내수용
원산지확인	북한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원산지증명서, 상품검사증, 계약서 등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⁸ 반입을 관리해야 하는 국영무역대상품목은 지정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인도 조건부 반입승인품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품목의 반입 절차는 통일부와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지침(북한산 농산물 반입제도 개선계획)에 의한다.

그림 3-3. 국영무역대상품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 인도 품목의 반입체계



국영무역품목 중 내수용 반입은 전량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인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때 가격은 시장접근물량의 최근 3회 혹은 3개월 평균 도입낙찰가격이나 그 자료가 없을 경우 최근 국정가격의 ±10% 이내에서 결정된다.

국영무역품목 중 원산지위반과 국내시장교란 요소가 높은 품목은 ‘집중 감시품목’으로 지정해 따로 관리되고 있다(고추, 팥, 녹두, 대두, 참깨 등). 집중감시품목은 연간 반입한도, 개인 반입한도, 1회 반입한도 물량을 각각 지정해 반입을 관리하고 있다.

표 3-4. 집중감시품목의 반입한도물량 운영 사례(2008.1)

단위 : 톤

품목	연간한도	개인한도	비 고
녹두	1,000	200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량 인도
팥	1,000	200	"
대두	2,000	300	"
참깨	300	100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4호, 2008.

< 저율관세품목 >

관세율이 저율(70% 이하)로 북한에서 생산 반입이 가능한 품목으로서 들깨, 당면, 땅콩조제품, 참깨분, 고추장, 메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품목의 반입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국내수급여건 및 국내생산자보호 필요성, 대북 설비투자 후 반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한편 대상 품목별로 연간 반입한도 물량과 1회당 반입물량을 설정해 그 범위 내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반입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대북설비 반출 후 반입 품목(고추장, 땅콩조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이 추진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교역업체의 기 투자분에 대한 손실보전 차원에서 일정량 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표 3-5. 저율관세품목의 반입한도물량 운영 사례(2008.1)

단위 : 톤

품 목	연간한도	개인한도	비 고
들 깨	1,000	20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량 인도 설비 반출업체에 한함
당 면	2,000	200	
땅콩조제품	1,200	100	
고추제품류	300	50	
참깨분	400	50	
메 주	300	50	
호 두	300	10	
표고버섯	800	25	
호 박	500	40	

주: 1) 개인한도 물량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일괄 배정 품목은 별도 공고.

2) 이외에 7개 수산물이 반입한도물량으로 지정되어 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4호, 2008.

표 3-6.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 제도화 관련 합의서 체결·발효 현황

회담명	합의서 명칭(체결일)	발효여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00.12.12-16)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 (’00.12.16)	국회 동의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00.12.12-16)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 (’00.12.16)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00.12.12-16)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 (’00.12.16)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00.12.12-16)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 (’00.12.16)	”
남북경제협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회의(’03.7.31)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03.7.31)	합의·발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 제3차 회의(’03.10.11-12)	남북 상사중재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 (’03.10.12)	국회 동의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04.4.20-22)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 이행을 위한 합의 (’04.4.22)	합의·발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북한농업동향 제8권 제4호, 2007.

3. 북한산 반입 관련 문제점

3.1. 남북한 사이의 문제

3.1.1. 제도적 인프라 미비

2000년 들어 남북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공식화·제도화되어 경제교류협력 분야에서도 공식적인 협의기구의 설치와 이를 통한 공식적·공개적 협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남북한 교역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제도화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 간 교역 및 경제사업 추진과 관련해 2005년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

소를 개성에 설치해 정부차원의 상설 협의기구로 기능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이 사무소의 기능은 소개와 상담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조정과 협의 기능은 취약하다. 또 2008년 초 북측의 철수 요구로 개성에서 철수해야 할 만큼 제도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청산결제 등 남북교역과 관련된 제도화 수준도 낮다. 대부분 합의를 체결한 상태이거나 비준을 거쳐 발효 단계에 있으나, 세부 규정, 협의체, 담당기관 등이 없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 통신, 통관(3통)의 문제도 남아 있다. 현재 사전에 승인된 통행시간에만 통행 가능토록 한 통행시간 지정제도로 북한 출입자가 통행 당일 편리한 시간에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역에서의 인터넷, 무선 전화통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남북 간 교역관련 협의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두 지역에서 남측으로의 통신문제는 사업 진행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선적지 사전 품위 검사가 불가능해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품질불량 문제는 남북 간 상사분쟁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 선적지에서의 사전 품위 검사이다. 양질품 도입을 위해 사전 견본 입수 등을 통해 계약조건과 상이한 물품의 선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3.1.2. 제3국산 농림산물 위장반입

제3국산 농림산물의 북한산 위장 반입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원산지 표시문제는 현 시점에서 작은 규모일지라도 남북 간의 농산물교역을 왜곡시키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남북한 양측은 위장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03년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해

북측의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을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 단일화했으며, 국내 조치로서 ‘위장반입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2004)’을 수립해 시행했다. 이들 조치로 2003년 이후 위장반입 사례는 감소했으나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제3국산의 북한산 위장반입은 북측 민경련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어 반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표 3-7. 북한산 농림수산물 위장반입 사례

연 도	세 관	품 명	수량(톤)	반입 일자
2003	서울	의류(중)	n.a.	'00.2.2-4.9
	부산	건명태(러)	466	'01.5.12-'03.3.21
	양산	백출(중)	10	'03.2.23
	군산	벗짚	580	'02.9.24-'03.9.30
	인천	건고추	386	'01.12.22-'03.5.210
	인천	더덕(중)	8	'03.5.1
	인천	건고추(중) 참깨(중)	260 30	'01.9.29-'03.10.6
	양산	건표고버섯(중)	11	'03.3.26-5.12
2004	부산	복어채(중)	n.a.	'02.4.27-'03.8.11
	부산	복어채(중)	12	'03.2.11-3.3
	부산	복어채(중)	262	'01.8.20-'03.9.22
	부산	백출(중)	77	'03.9.2
	부산	상황버섯(중)	7.7	'03.6.30-'04.1.26
	부산	백출(중)	57	'03.10.13
	부산	복어채(중)	11	'03.9.29
	인천	대두 등(중)	6,806	'02.6.14-'03.9.9
2005	부산	복어채(중)	24	'03.7-11
	부산	표고 외 1종(중)	12	'02.5.16-'05.4.1
	서울	건고사리, 콩(중)	24	'00.7.10-12.27
	서울	호두(중)	40	'03.1.16, '04.1.24
	서울	건표고, 건고사리(중)	12	'04.7.3, '05.7.15
2007	부산 양산	복어채(중)	(8건)	-

자료 : 통일부.

3.1.3. 남북한 간 물류비 과다

남북 간 교역 물자 수송은 대부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물동량 부족 및 북한의 높은 항만 이용료 등 비용상승 요인으로 남북 간 해상운임은 중국-남한 간 운임의 약 2.5배 수준에 달한다⁹

농산물과 같이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물품일수록 물류비용 부담이 증대된다. 농산물의 특성상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유통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유통기간 단축을 위해 해상운임이 아닌 육로수송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육로 운송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남북한 간 물류비용 상승 요인은 많다. 우선 교역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소식율이 80~90%가 되어야 국제시세에 맞는 운임 적용 가능하나 50% 전후에 그치고 있다. 체선 기간이 과다하다는 문제도 있다. 인천-남포의 적정운항일수는 왕복 약 6일이나 체선 기간이 추가되어 물류비를 높이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체선의 원인은 남포항에서의 입출항 수속 지연과 하역시설의 고장 및 단전 등으로 컨테이너 하역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북측 항구 사용료도 높은 수준이다. 남포항의 경우 사용료는 중국 다롄(大連)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컨테이너 분실도 남북 간 물류비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3.1.4. 북한의 식량사정과 농업생산체제상의 문제

북한은 식량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가용자원을 모두 식량생산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수출 가능한 농산물의 품목과 양이 매우 제한적이다. 버섯류, 한약재, 견과류 등 일부 고정적인 외화 획득

⁹ 남북 간 운임 : 동해(라진/부산) \$850/TEU, 서해(남포/인천) \$800/TEU.
중국(대련)-남한(부산, 인천)간 운임 : \$300~\$350/TEU(농수산물유통공사).

특용 재배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 가능한 품목의 종류와 물량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농업생산체제가 계획생산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입 장애요소도 있다.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들기 이전에 농산물 교역 상담이 종료되지 않으면 반출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상담을 1년 늦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입처인 남측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처인 북측의 생산계획에 따라 반입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3.2. 국내 반입제도 및 관리상의 문제

3.2.1. 무관세 반입에 따른 문제

북한산 농림산물은 국내 반입에 무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반입 후 국내 판매 시 국내외 가격차에 기인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므로 국내 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국내시장 교란요인이 적은 품목의 경우 포괄승인품목으로 반입을 자유화하지만 국내시장을 교란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익이 크면 반입승인, 국영무역대상 지정, 반입한도 설정 등의 절차로 관리하게 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인수관리하기 어려운 고율관세 부과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무관세 규정 때문에 북한산의 국내반입 수요가 큰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참기름을 들 수 있다.¹⁰ 북한산 참기름 반입 신청 시 국영무역대상품목과 동일하게 공사 등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인수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보관 시 산패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에서 인수 판매가 곤란해지며, 이 경우를 고려할 때 반입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

¹⁰ 참기름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관리 중인 품목으로 일반 수입관세가 매우 높다.

국가가 지정한 기관의 인수가 곤란한 고율관세 품목의 경우 국내외 시세차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회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내국 간 거래 무관세를 적용키로 한 관련법의 저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2. 국영무역 대상품목 관리상의 문제

대부분의 국영무역 대상품목은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로 북한산의 반입은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따라서 반입한도물량 설정시 정부는 국내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행 반입한도물량으로 남북 간 농산물 교역 활성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영무역 대상품목의 반입과 관련해 인수재원 및 수익금 처리 문제도 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수산물유통사 인수도 품목의 인수재원 및 수익금의 농안기금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농안기금의 품목별 수입예산에 여유가 있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입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반입규모가 커질 경우 북한산 농산물을 농안기금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¹¹

3.2.3. 통관, 검역 상의 문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시 전수검사원칙에 따르는 문제도 있다. 북한산 농산물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은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②항에 의거 반입물품 전수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다. 이를 위해 신속한 통관이 어려우며 물류비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¹¹ 1996년 ‘북한산 농산물 반입제도 개선계획(농림부, 1996.3.6)’ 상 농수산물유통공사 인수 소관품목이 아닌 경우라도 공사에서 인수 및 수익금을 농안기금으로 활용토록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검역상의 문제도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북한 내 구제역 발생으로, 가금육은 200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각각 반입이 금지된 상태이다. 가축 방역이 체계화되지 않고 낙후된 상황에서 북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국내 반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3.2.4. 계약재배를 통한 반입의 문제점

계약재배를 통해 반입하는 농림산물은 국내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반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북한산 농산물 반입대책, 통일부, 2005.1).

그러나 실제로 계약조건, 인적왕래, 재배기술교류, 남측의 모니터링 등에 대해 북측은 수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남측은 계약재배 계약 시점에서 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남측 기업이 안게 되는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이는 계약재배를 통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의 현실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국영무역대상 농림산물의 유통

국영무역대상 품목은 반입승인대상 품목 중 국내 시장과 생산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국내반입 시 전량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인수관리하고 있다. 국영무역방식으로 국내 반입하고 있는 품목에는 양파, 마늘, 고추, 녹두, 팥, 생강, 메밀, 대두, 낙화생, 참깨가 있는데, 북한산으로서 최근 3년간 반입실적이 있는 품목은 대두(콩나물 콩), 녹두, 팥 등 3개 품목이다.

국영무역대상 품목으로서 최근 반입되고 있는 북한산 농산물은 대두(콩나물콩), 녹두, 팥 등이다. 이들 품목의 국내반입과 유통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인수와 유통공사의 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품목의 소비는 최종소비자가 직접 구입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공업자의 가공을 거쳐 다른 상품의 형태로 소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영무역대상 품목은 소비자의 구매 및 소비행태보다 유통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유통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영무역품목을 유통공사에서 인수한 후 판매하는 방법에는 공매, 직배, 상장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공매는 실수요업체와 직접 판매하는 업체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매도하는 방식이다. 직배는 입찰에 의존하지 않고 실수요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방법이다. 상장은 법정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을 대상으로 상장판매약정 체결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1.1. 대두(콩나물 콩)

1.1.1. 국내 생산 및 수급현황

국내 콩 재배면적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적정 벼 재배면적 유지를 위한 논콩 재배장려 및 국산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부의 수매지원 등으로 2005년 10만여 ha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된 물량의 소비 부진으로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2005년 이후 국내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콩나물 콩에 대한 정확한 생산통계는 없으나 전국 콩 생산량의 20~25% 정도가 콩나물용 콩으로 추정되며, 콩나물 콩 주산지는 제주(전체 생산량의 90%)와 전라남도로 나타나고 있다.¹²

우리나라의 식용 콩 수입은 시장접근물량과 그 외의 물량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접근물량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국영무역,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1995년 시장개방 이후 식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은 대부분 미국산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일부 물량이 콩나물 용도로 10,000톤 내외로 도입되고 있다.

시장접근물량 이외의 민간 수입량은 연간 40,000~60,000톤 수준으로 이중 60~70% 정도가 콩나물 콩(소립종)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단위 : ha, 톤

구 분		'03	'04	'05	'06	'07
전국	면 적	80,447	85,270	105,421	90,248	76,267
	생산량	105,089	138,570	183,338	156,404	114,245
전남	면 적	19,996	19,353	23,353	18,628	15,985
	생산량	29,394	33,287	42,736	35,021	23,029
제주	면 적	5,079	4,007	5,432	5,525	5,468
	생산량	5,028	6,732	9,126	8,232	5,486

자료: 통계청, 2007년 작물통계, 2008. 3.

¹² 국내 콩나물 콩 생산량은 2003년 21,000톤, 2004년 28,000톤, 2005년 37,000톤, 2006년 31,000톤, 2007년 23,000톤으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농수산물유통공사).

1.1.2. 북한산 대두의 국내유통

대두의 경우 전체 판매물량의 약 10%를 공매 후 공매 평균가격을 직배 가격으로 결정해 직배방식으로 전량을 공급하고 있다. 공매는 콩나물을 직접 재배 판매하는 실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판매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며, 직배는 입찰에 의하지 않고 실수요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공매와 직배에는 대한두채협회 소속 회원사와 개별 콩나물 재배업체가 참가하고 있다.¹³

표 4-2. 연도별 대두 시장접근물량(기본물량) 운영현황

단위 : 톤,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C/S량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저울관세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고율종가	535.6	530.2	524.8	519.4	514.0	508.6	503.2	497.8	492.4	487.0
종량(원/kg)	1,051.0	1,041.0	1,030.0	1,020.0	1,009.0	998.0	988.0	977.0	967.0	956.0

주: 2005년 이후는 WTO 농산물 DDA협상 타결 지연으로 2004년도(UR 마지막 이행 연도) 기준 물량 및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4-3. 콩나물 콩 수급현황(2005-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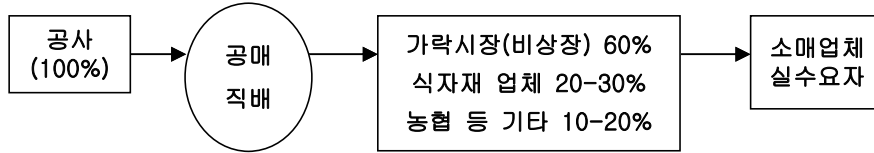
단위: 톤

구 분		2005	2006	2007	
공급	수입산	국영무역 공급 ¹⁾	9,978	15,595	11,877
		민간수입 ²⁾	41,929	13,904	26,970
	국내산 ³⁾	28,000	37,000	31,000	
수요	연간소비량	79,907	66,499	69,847	

주 1) 연도별 공사 판매량.
 2) 연도별 민간 콩 수입량의 70%를 콩나물 콩으로 추정.
 3) 전국 콩 생산량의 20%로 추정, 전년도 생산량을 당해연도 공급.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¹³ 대한두채협회 회원사는 약 1,000개, 농수산물유통공사 공매에 참여한 개별 콩나물 재배업체는 2007년 34개사에 달하고 있다. 한편 대한두채협회는 회원사를 대표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직배물량을 배정받은 후 회원사에게 재공급하고 있다(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림 4-1. 북한산 대두 유통경로



북한산 콩나물 콩이 공매나 직배 형태로 국내시장에 공급되면 그 이후 부터는 일반적인 콩나물 콩과 차별되는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매와 직배 이후 북한산 콩나물 콩의 주요 판매처는 도매시장(가락시장 비상장) 60%, 식자재 업체 20-30%, 농협 등 기타 10-2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07년).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공급된 콩은 시장 내 중도매인을 통해 식자재 업체, 소매상 등으로 재판매되고 있다.

1.2. 녹두

1.2.1. 국내 생산 및 수급현황

국내의 녹두 주산지는 전남(50%)과 제주(16%)이다. 국내 녹두 재배면적은 1980년 6,472ha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4년 1,268ha까지 감소했으나, 2007년에는 2,072ha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배면적 증가는 2006년부터 관세청 저가 수입신고 단속의 영향으로 수입물량이 감소해 국내시장의 녹두(국산, 수입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녹두는 팥과 함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국영무역,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시장접근물량 관리되고 있다. 녹두 수입은 2006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도입한 1,500톤을 제외하면 매년 전량 민간에서 수입한 시장접근물량 이외의 물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1.2.2. 북한산 녹두의 국내 반입 및 유통

북한산 녹두(건조/종자용 이외와 건조/종자용)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국영무역방식으로 수입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국내 반입 시 전량 유통공사에서 인수 및 판매관리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인수, 판매관리하고 있는 북한산 녹두는 일반 가공용으로 1993년 150톤을 시작으로 국내에 꾸준히 반입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녹두 판매는 공매, 상장, 직배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공매와 상장은 입찰을 통해 매도한다. 이 중 상장의 경우는 농협공판장에 상장해 입찰하고 있다. 공매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들이 참가해 입찰하고 있는데 2007년의 경우 179인의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이 입찰에 참여했다. 직배는 대두와 마찬가지로 두채협회 및 개별 숙주나물 재배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2007년 반입된 북한산 녹두의 국내 주요 판매처는 중간도매상(59%), 도매상(19%), 식품공장(10%), 요식업체(7%)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농수산물유통공사). 북한산 녹두는 정선과 선별 상태가 대부분 불량해 재정선, 재선별 후 소매단계로 유통되고 있다. 2007년에 도입된 북한산 녹두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 판매물량의 약 50%가 재정선, 재선별이 가능한 업체를 거쳐 소매업체나 실수요자에게 유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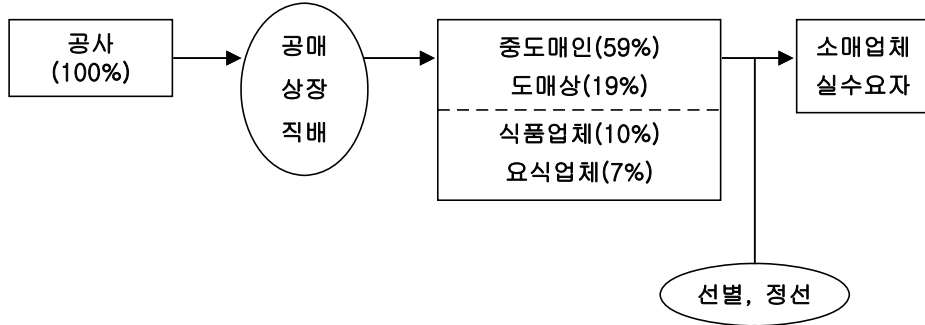
표 4-4. 녹두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단위 : ha, 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	면적	1,557	1,268	1,365	1,297	2,072
	생산량	1,681	1,354	1,482	1,504	2,240
전남	면적	749	718	790	707	1,208
	생산량	951	840	893	884	1,353
제주	면적	186	113	135	253	337
	생산량	130	62	130	245	310

자료: 통계청, 「2007년 작물통계」, 2008. 3.

그림 4-2. 북한산 녹두 유통경로



1.3. 팥

1.3.1. 국내 생산 및 수급현황

국내 팥 주산지는 전남(25%), 강원(21%), 경북(17%) 순이며, 팥 생산량은 밭 경지면적 감소 및 고소득 작물로의 전환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내산 팥의 소비 또한 국민 식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4-5. 팥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단위 : ha, 톤

구분		'03	'04	'05	'06	'07
전국	면적	6,876	6,863	5,077	4,242	4,775
	생산량	6,424	7,968	5,575	4,923	5,405
전남	면적	1,262	1,428	1,025	920	1,196
	생산량	1,249	1,742	1,277	1,132	1,340
강원	면적	1,127	1,042	780	823	1,011
	생산량	1,195	1,219	1,014	1,021	1,294
경북	면적	1,134	1,163	761	764	803
	생산량	1,043	1,384	799	787	803

자료: 통계청, 「2007년 작물통계」, 2008. 3.

팥은 녹두와 함께 분류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국영무역,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시장접근물량 관리 중이며, 2006년 유통공사에서 국영무역으로 녹두 1,500톤 수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팥으로 도입하고 있다. 시장접근물량 이외의 민간 수입물량은 전체 수입량의 30~40% 내외로 국내 작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영무역의 경우 팥은 2006년부터 관세청저가 수입신고 단속 등의 영향으로 2006년 4,177톤으로 수입물량이 급감했으나, 2007년 들어 다시 8,876톤으로 회복했다.

팥은 크게 일반 가정용과 가공용으로 사용되며, 가정용은 주로 혼식용으로 사용되고, 가공용은 제과·제빵, 빙과·제빙(떡)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1.3.2. 북한산 팥의 반입과 국내유통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인수, 판매관리하고 있는 북한산 팥은 일반 가공용으로서 1995년 1,061톤 반입을 시작으로 국내에 꾸준히 반입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반입품이 유통공사 구매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물품대가 인하된 적이 있다. 그 영향으로 최근에는 국내 반입량이 감소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팥 판매도 녹두와 마찬가지로 공매, 상장, 직배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공매와 상장은 입찰을 통해 매도하고 있다. 상장은 농협 서울양곡공판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매에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기타 매매참가인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2007년의 경우 38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07년 북한산 팥의 주요 판매처는 중간도매상(60%), 도매상(24%), 식품공장(8%), 요식업체(2%) 등이며, 정선 및 선별업체를 거쳐 소매와 실수요자에게로 유통되었다.

국영무역대상에 해당되는 북한산 대두, 녹두, 팥의 반입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인수도, 그 이후 국내 판매 상황은 <표 4-6>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4-3. 북한산 팔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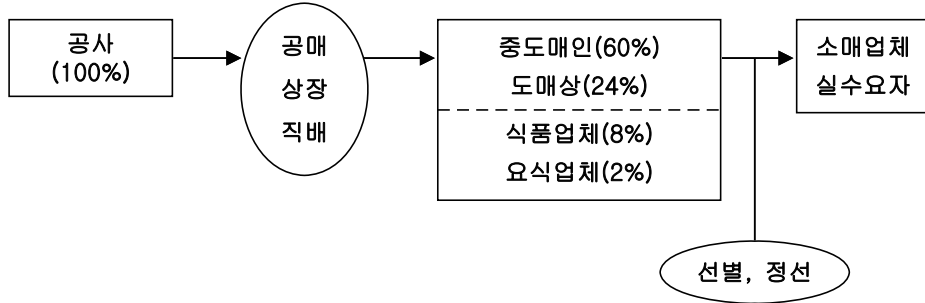


표 4-6. 국영무역대상 북한산 농산물의 국내유통(대두, 녹두, 팥)

		대두	녹두	팥
판매방법	구매	전체 물량의 약 10% 구매	전체 판매물량에 대해 구매, 상장 구분 없이 일반 경쟁입찰(전자입찰)에 참가해 고가 입찰순으로 낙찰자 결정	전체 판매물량에 대해 구매, 상장 구분 없이 일반 경쟁입찰(전자입찰)에 참가해 고가 입찰순으로 낙찰자 결정
	상장	.	.	.
	직배	구매 평균가격을 직배 가격으로 결정해 공급	구매 평균가격을 직배 가격으로 결정해 공급	구매 평균가격을 직배 가격으로 결정해 공급
참여업체	구매	(사)대한두채협회 회원사 개별 콩나물재배업체	중도매인 및 매매인	중도매인 및 매매인
	상장	.	농협서울양곡공판장	농협서울양곡공판장
	직배	(사)대한두채협회 개별 콩나물재배업체	(사)대한두채협회 개별 녹두 재배업체	
물품출고		공사 보관지사 해당비축기지에서 공매낙찰업체 또는 직재업체에게 해당물량 상차조건으로 물품인도		
포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요식업체 공급 시 4kg 시루 단위 또는 종이박스 판매 일부 대기업 또는 대형마트와 OEM계약 형태로 300g 등 비닐 소포장 단위로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용 구매물량의 약 50% 정도 재정선, 재선별 후 40kg(80%) 와 20kg(20%)로 포장 나물용 4kg 종이박스 또는 시루 판매 	
주요판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락시장 60%, 식품업체 20-30%, 농협 등 기타 10-20% 가락시장 중도매인을 통해 식품업체, 소매상에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용: 중도매인(59%), 도매상(19%), 식품업체(10%), 요식업체(7%) 나물용: 도매시장(57%), 요식업체(21%)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매인(60%), 도매상(24%), 식품업체(8%), 요식업체(2%) 등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8.

2. 유통 단계의 문제

북한산 농산물 유통 시 유통업체가 직면하는 문제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제도상의 문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품목을 막론하고 표출되는 주요 문제는 북한산 반입의 불확실성에 따르는 유통계획수립에 애로가 발생한다는 점과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2.1. 국영무역대상 품목의 문제

우선 국영무역대상 품목인 대두, 녹두, 팥의 국내유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품목별로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북한산 대두의 경우 중립종과 소립종이 혼재되어 있는 등 입도가 균일하지 못하며 기타립(미숙립, 충해립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요컨대 정선상태가 불량하다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 포장 재질 불량으로 운송 과정에서 감량 발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산(25kg 지대)과 비교 시 중량 미달로 인한 불만 제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국내 콩나물용 원료 콩 확보가 어려워 북한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품질 면에서 볼 때 민간수입산-유통공사수입산-유통공사북한산 순으로 평가되고 있을 만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녹두는 직매보다는 공매와 상장 물량이 많으나 공매 및 상장 물량의 일부 물량이 다시 두채협회 회원사에게 판매됨에 따라 유통단계가 다단계화되어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기도 한다. 한편 북한산 녹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판매 후 정선, 선별을 통해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통단계에서 품질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양질품을 반입하거나 또는 반입 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정선, 선별 작업을 거친 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산 꺾은 입도가 낮고, 이물 및 기타립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산에 비해 품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포장재 불량으로 공매 낙찰업체에서 인수 시 감량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포장재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2.2. 일반 품목의 문제

국영무역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산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반적인 문제도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은 반입시기, 물량 등이 불확실해 사전 반입관리는 물론 판매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남북한 교역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문제로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유통업체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산의 품질 또는 품종을 육안으로 비교할 때 중국산과 유사하기 때문에 중국산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수준이 낮아 국내 반입 북한산이 중국산일 것이라는 선입견도 존재한다.

북한산 농림산물의 원산지에 대해 약 51%의 소비자가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49%는 북한산 농산물의 원산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산지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사유로는 중국산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 49%, 그간 위장반입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7%, 북한의 농업사정을 고려한다는 의견이 14%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를 불신하는 이유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막연하게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일 것이라는 추측에서 비롯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반입과 유통단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소비 실태와 선호

곡물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북한산 농림산물은 특별한 가공단계 없이 국내 유통단계를 거쳐 반입 시 형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다. 따라서 곡물을 제외한 일반 농림산물에 대한 최종소비자의 구매 행태와 선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남한에 반입되고 있는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소비자 및 북한 방문객 5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매 실태와 관련해서는 북한산 농림산물의 구입 장소, 구입 동기, 구입 용도, 구입 품목과 횟수, 총 금액 부분을 조사했다.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인식 부문에서는 가격에 대한 평가 및 북한산 농림수산물과 국산,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비교, 향후 재구매 의향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다.

표 4-7.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소비자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일반 소비자	북한 방문객
조사인원	362명	200명
조사방법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관광객 설문조사
조사기간	2005. 6. 2 - 5	2005. 5. 27 - 6. 4
조사내용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구매 실태와 평가에 대한 조사	

표 4-8. 북한산 농림수산물 구입 경험자 비중

구 분	구 매 자 (명)	비 중 (%)
일반소비자	280	77
북한지역관광객	105	53

일반소비자의 경우 총 362명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280명이 북한산 농림수산물을 구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북한방문객의 경우 200명 중 53%에 해당하는 105명이 북한산 농림수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280명의 일반소비자 중 77%가 북한산 농림수산물 유경험자라는 것은 매

우 높은 수치로 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이미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1년간 북한산 농림산물의 품목별 구입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일반 소비자의 경우 구입자수가 가장 높은 것은 고사리, 버섯류, 견과류 순이었다. 고사리의 경우 총 280명 중 77%에 해당하는 216명이 구입경험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나타내었다. 1인당 평균구입횟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참깨, 들깨로 4.6회를 기록했으며 산채, 채소가 4.0회, 버섯류가 3.8회로 그 뒤를 이었다. 총구입금액은 버섯류가 5,21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사리, 참깨·들깨 순이었다.

고사리, 버섯, 참깨·들깨는 구입자수, 1인당 평균구입횟수, 총구입금액에서 모두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농산물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품질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결과로 보여진다.

표 4-9. 북한산 농림산물의 품목별 구매실태

	구입자 수		1인당 평균구입횟수		총구입금액	
	품목	구입자수 (명)	품목	구입횟수 (회)	품목	금액 (천원)
1순위	고사리	216	참깨, 들깨	4.6	버섯류	5,218
2순위	버섯류	108	산채, 채소	4.0	고사리	3,107
3순위	견과류	73	버섯류	3.8	참깨, 들깨	1,420
4순위	참깨, 들깨	60	고사리	3.5	견과류	1,105
5순위	산채, 채소	39	견과류	2.0	산채, 채소	544
6순위	수산물	21	인삼류	2.0	수산물	329
7순위	인삼류	9	수산물	1.4	인삼류	76
8순위	기타	20	기타	2.9	기타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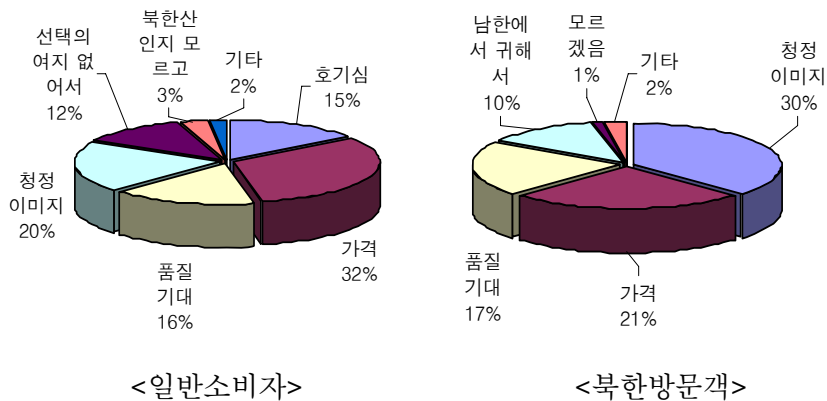
표 4-10. 북한산 농림수산물 구입처

	대형 할인점	백화점	재래시장	도매상	온라인 쇼핑몰	북한방문	기타	총계
인원	189	36	100	13	7	9	13	367
비율	51	10	27	14	2	2	4	100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구입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소비자의 약 51%가 할인마트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래시장(27%), 도매상(14%), 백화점(10%)이 뒤를 이었다. 약 78%의 일반소비자가 북한산 농림산물을 할인마트 혹은 재래시장에서 구입했다는 것을 통해서 북한산 농림산물의 구입이 생각보다 용이함을 알 수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의 구입 동기를 조사해본 결과 일반소비자는 품질에 대한 기대(36%)를 1순위로 뽑았으며, 2순위는 저렴한 가격(32%)이었다. 북한방문객의 경우는 청정이미지(30%)가 가장 높았으며 가격 저렴(21%), 품질 기대(17%) 순이었다. 북한산 농림산물의 품질, 저렴한 가격이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끄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4.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구입 동기



북한산 농림산물 가격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소비자의 경우 54%가 대체로 저렴하다, 34%가 적절하다, 2%가 많이 저렴하다고 답해 약 90%가 가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북한방문객의 경우는 44%가 적절하다, 33%가 대체로 저렴하다, 11%가 많이 저렴하다고 답해 88%가 가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저렴한 가격이 소비자가 북한산 농림산물을 구매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의 안전성 및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국산 및 중국산 농

림산물과 비교해 실시했다. 국산 농림수산물의 안전성과 이미지를 100으로 했을 때 일반소비자의 경우 북한산 평균 73점, 중국산 평균 39점이었다. 북한방문객의 경우 국산 100점 기준 북한산이 평균 76점, 중국산이 평균 46점을 기록했다. 북한산 농림산물이 중국산에 비해 무려 30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북한산 농림산물이 품질, 안전성, 이미지 등 모든 측면에서 중국산에 비해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표 4-11.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가격 평가

단위: %

구분	많이 저렴	대체로 저렴	적절	대체로 비쌌	많이 비쌌	모르겠음	계
일반 소비자	2	54	34	7	0	3	100
북한 방문객	11	33	43	9	1	3	100

표 4-12.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안전성, 이미지 평가

구분	품질	안전성	이미지	평균
국산 평가 지수	100	100	100	100
북한산 평가지수	일반소비자	76	71	73
	북한방문객	75	78	75
중국산 평가지수	일반소비자	44	36	39
	북한방문객	48	44	45

표 4-13. 북한산 농산물 향후 구입 의향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모르겠다	계
일반 소비자	구매자	73	3	24
	비구매자	54	13	33
북한방문객	65	16	19	100

북한산 농림산물 향후 구입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 소비자 구매경험자 중 73%가 재구매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산 농림산물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 또한 54%가 향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방문객의

경우 65%가 향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산 농림산물의 향후 구입 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긍정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조사 결과 일반소비자 중 약 77%가 북한산 농림산물 구매경험자인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 달리 이미 많은 수의 일반 소비자가 북한산 농림산물을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대형할인점 혹은 재래시장에서 북한산 농림산물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산 농림산물의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의 구매빈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고사리, 버섯, 견과류 등이었으며 특히 고사리의 경우는 북한산 농림산물 구매 경험자 중 약 77%가 구매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북한산 농림산물의 가격에 대해 적절 혹은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품질이나 안전성, 이미지 또한 중국산 농림산물에 비해 우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 증가 추세와 더불어 소비자의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향후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전망할 수 있게 한다.

1. 반입 관련제도 개선 방향

1.1. 남북 간 협의와 제도화

1.1.1. 원산지 증명체계의 실효성 제고

제3국산 농산물의 북한산 위장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반입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해 위장반입이 발생하고 있다.

위장반입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산 농산물 반입 시 선적지 품위점검 또는 생산현장 방문 등이 가능하도록 북측과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북측의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복수화를 검토해 북측과 협의한다. 셋째, 계약재배 협력사업을 확대해 파종, 수확, 반입시기 등 단계별로 북측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주요 반출 항구에 남북농업협력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반입 농림산물의 선별, 검사, 검역, 포장 등 일련의 과정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통관 과정에서도 제3국산 농림산물의 위장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문가를 육성해 세관에 배치하고, 반입물품 관련 서류를 관세청의 전산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확인

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규모가 증가한다면 전문 반입항구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

1.1.2.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육로운송 확대

남북 간 운송경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상운송은 육로운송에 비해 약 2.5배의 비용을 교역주체가 부담하게 되어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남북 간 연결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개성·금강산 지역을 중심으로 육로운송이 가능하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육로운송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육로운송 확대를 위한 남북 간 협의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육로운송에 연계된 도로, 철도, 물류센터 설치 등 물류 기반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개성과 금강산 인근의 육상물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다.

표 5-1. 육로운송을 통한 북한산 농산물의 운송비용 절감액 추정

구 분	운송단가(원/톤)
해상운송(A)	60,990
육로운송(B)	23,465
절감액(A-B)	37,525

주: 1) 운송구간 : 해상(남포항→인천항→이천 비축기지), 육로(개성→이천비축기지).

2) 육로 운송거리 : 인천항-이천 110km, 개성-이천 140km.

3) 해상운송 : \$800/TEU, 톤당 44,000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1.1.3. 상사중재위원회 활성화

남북 교역 시 북측 관련 애로사항은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 선적지 검사 불가, 품질하자, 납기지연, 북측의 일방적 계약파기, 통신과 교통 불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문제들이 실제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반입업체

에서는 손실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적지 물품검사, 클레임 해결을 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운영 등은 남북 당국차원에서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1.1.4. 기타 사항

계약재배(농업부문의 투자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교류, 방문, 기술지도, 검사 등 편의 제공과 투자협력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일반교역제도의 정착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생, 검역, 식품안전 등에 대한 남북 간 협의와 관련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양국 간에 방역전문기술을 교류하는 등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계, 양돈 등 시범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축산물 반입을 위한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1.2. 국내 반입제도 정비

1.2.1.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 조정과 승인절차 개선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 지정품목의 조정이 필요하다. 곡물, 육류, 유제품 등 식량용 농축산물은 북한이 반출할 여력이 없으며, 반출하려 해도 인도적 차원에서 반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반입금지품목으로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승인대상 품목과 유사·대체관계에 있는 품목들은 대부분 포괄승인품목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중 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있다. 향후 국내 수급 동향, 현행 농산물 관세 제도의 문제점, 포괄승인품목에 대한 민간의 반입상황과 전망 등을 품목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로 종류가 다른 품목의 반입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승인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시 농림수산식품부의 검토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 내의 의견 접수와 수렴도 창구가 단일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반입 승인 시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국내수급 및 가격동향에 대한 관측이 실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여부 결정에 관측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2. 국영무역대상품목 반입한도물량 증량과 관리방법 개선

남북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반입한도물량 증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입한도 설정 품목은 대개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품목의 반입한도물량을 상향조정해 반입업체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정이익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수입 품목 중 시장접근물량이 증량될 경우 정부가 해당 품목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경우 북한산 반입물량을 공급량에 반영한다면, 연간 반입한도물량의 증량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남북한 교역규모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산 반입 품목의 반입한도물량 결정과 배정 시 전문 반입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공적단체의 의견을 참고한다. 이 경우 반입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증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영무역대상품목의 인수재원 및 수익금 처리규정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농안기금운영계획상 북한산 농산물 인수재원에 대한 예산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기금운용근거, 대상품목 등에 대한 지침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1.2.3. 특정 품목에 대한 반입 시 인센티브 부여

북한산 농림산물 중 특정 반입품에 대해서는 승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반입, 통관, 인수도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반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한 농업협력의 결과로 생산된 농림산물과 육로 운송으로 반입되는 농림산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남북한 간에 계약재배를 통해 북한산 농산물이 반입될 경우 단순반입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즉, 원산지 위장반입 논란이나 품위 위격 등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상사중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 북한의 농업 현장에 선진 재배기술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행 ‘북한산 농산물 반입대책(통일부, 2005.1)’에서는 계약재배를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효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남북 간 계약재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해당 품목 반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반입의 한도물량과는 별도로 계약재배 반입물량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국영무역품목의 경우에는 반입단가 책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또 계약재배 품목의 통관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있다.

육로운송의 경우는 접경지 계약재배 혹은 농업협력사업과 육로운송을 연계해 우대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1.2.4. 통관절차 간소화

국내 반입되는 북한산 농림수산물은 국내 반입 항구에서 전수, 전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수검사 방식을 선별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통관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2. 국내 유통의 개선 방향

북한산 농림산물의 국내 유통이 국내산 및 다른 수입산과 크게 다르거

나 차별화된 경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농림산물의 유통과 소비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문제와 개선방안은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북한산 농림산물 유통업자와 소비자 면접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영무역대상 품목인 대두, 녹두, 팥의 국내유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즉, 곡종별로 품위가 낮거나 정선상태가 불량해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포장재질이 불량해 운송 과정에서 감량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유통단계에서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후 인수도 지정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정선과 선별 작업을 거친 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포장도 개선된다면 유통과정에서 감량에 대한 불만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산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반적인 문제도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시기, 물량 등이 불확실해 반입관리와 판매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는 남북한 교역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문제로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의 협의가 심화되어야 하며, 남북 양측의 신뢰를 토대로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반입관리제도가 더 공고해져야 한다.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유통업체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가격 대비 품질 만족도는 소비자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산 농림산물의 원산지에 대해 많은 소비자가(51%)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반입 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이 여전히 의심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나, 북한산의 품질 또는 품종을 육안으로 비교할 때 중국산과 잘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도 기인하고 있다. 최근 원산지 표시제도가 강화된 이후 최종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품목뿐만 아니라 가공 단계

혹은 대형 소비처로 납품되는 품목에 있어서도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어 원산지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반입과 유통 참여자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에 대해 특수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북정책이 취하는 입장과 농업정책이 취하는 입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대북정책의 입장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경제공동체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남북한 간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남북한 간 교역을 민족내부 거래로 간주해 수입관세와 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기본적으로 자유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농업정책 차원에서는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을 해외농산물의 수입과 같은 시각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국내 농가경제의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농림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제한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게 된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정책수단으로는 반입승인을 요하는 농림산물 품목을 지정해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을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함에 따라 관련 정책기조가 뚜렷하게 정립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은 취약한 상태이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이 단기간에 해외 농산물 수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북한의 수출 농산물 생산 여력이 부족하고, 둘째, 북한산 농산물의 상품성이 낮아 경쟁력이 부족하며, 셋

제, 북한의 농업생산이 계획생산체제이기 때문에 농림산물 생산이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의 교역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 품목 수와 반입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또 단기적으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낮으므로 관련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것이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국내 농림산물 시장에서 과잉공급 등의 요인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거나 반입하려는 농림산물이 제3국산으로 의심된다거나 할 경우, 오히려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책과 제도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도 안고 있다. 정책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정책과 제도가 불확실함에 따라 기업이 북한 농림산물 반입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농림산물 교역 여건도 차츰 호전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규모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장기 전망에 맞추어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기조와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의 기본입장에 의하면 남북한 교역은 내국 간 거래이다. 이는 ‘남북교류협력법,’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에 담겨져 있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 대부분의 북한산 상품은 포괄승인품목으로서 무관세로 자유롭게 반입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정책의 입장에서는 국내 농가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으로나마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UR 협상결과 관세화 방식으로 수입 개방된 품목의 경우 대부분 국내외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무관세의 이점을 안고 북한산이 대량으로 반입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제3국산 농림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반입된다면 북한경제에 혜택도 주지 못하면서 국내 농가에게 부정적 영향만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입장을 반영해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입 승인절차 및 교역대상물품(통일부 고시)’에서는 189개 품목을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특별히 지정해 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농림수산물로 UR 협상결과 관세화 방식으로 수입 개방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북정책과 농업정책의 입장차이로 말미암아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정책기조와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이 지정되는 단계, 농림산물 반입을 승인하는 과정, 농림산물을 반입하고 통관하는 과정, 반입농림산물 처리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반입승인품목의 지정과 반입승인단계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밖에 통관과정 및 물품인수과정의 문제는 관리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선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해 장·단기적인 농업정책 기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대북정책과 농업정책은 상충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이다. 즉, 대북정책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는 북한을 고려한 농업정책에서 추구하는 이념 및 목표와 다르지 않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수립과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은 농업정책의 상위정책에 해당되며, 농업정책의 구성요소에도 대북한 농업정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에서는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해 장기적인 농업정책기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산 농림산물의 자유로운 반입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증대에 따른 국내 해당농가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 간에 교역을 촉진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범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제3국산 농림산물 위장 반입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남북한 당국 간에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교역 규범이 완비되지 않고 있다. 이 규범이 완비되고 안정성

이 증명될 때까지 주요 농림산물의 반입을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현재 반입 관리제도의 틀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관련된 단기적인 농업정책기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농림산물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남북한 당국자 간에 협의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가 있다. 그것은 첫째, 원산지 증명 및 확인과 관련된 문제 해결 노력, 둘째, 육상 운송로를 확보하고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등 물류비 절감 노력, 셋째, 이들 문제를 논의할 연락 및 협의기구 설치를 위한 노력 등이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 증명 문제이다. 남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원산지 증명 발급 내용에 관해 남북한 정부기관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둘째, 특정 농림수산물 교역창구를 양측 모두 단일화·전문화해 위장 반입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셋째, 원산지 증명이 의심될 경우 해당 농산물 생산현장과 물류유통 과정을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넷째, 위반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제재 수단 마련 등이다.

북한과의 공동 노력과는 별도로 국내의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 제도나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남북한 교역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우선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 조정과 승인절차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식량작물, 육류, 유제품 등 식량용 농축산물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반입금지품목으로 따로 관리하는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승인대상 품목과 유사·대체관계에 있는 품목들 중 반입이 증가되면 국내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있다. 향후 국내 수급 동향, 현행 농산물 관세제도의 문제점, 포괄승인품목에 대한 민간의 반입상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별로 반입 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시 농림수산식품부

내의 의견 접수와 수렴 창구가 단일화 되어야 하며 농림수산물부의 검토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 반입 승인 시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국내수급 및 가격동향에 대한 관측이 실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여부 결정에 관측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반입한도물량 증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반입업체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정이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수입 품목 중 시장접근물량이 증량될 경우 북한산 반입물량을 공급량에 반영한다면 연간 반입한도물량의 증량이 가능한 동시에 남북한 교역규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영무역대상 품목의 인수재원 및 수익금 처리규정도 명문화해 자금 이용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산 농림산물 중 특정 반입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농업협력의 결과로 생산된 농림산물과 육로 운송으로 반입되는 농림산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순 반입 시의 한도물량과는 별도로 반입물량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국영무역품목의 경우 협력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인수 가격을 책정하는 방안도 있다. 또 통관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있다.

한편 북한산 농림산물 유통업자와 소비자 면접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도 있다. 우선 국영무역대상 품목의 국내유통 단계에서는 품위가 낮고 정선상태 및 포장이 불량하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수도 지정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정선과 선별 작업을 거친 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산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반적인 문제는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즉,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시기, 물량 등이 불확실해 계획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북한 교역이 가진 고유의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의 협의뿐 아니라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반입관리제도가 한 차원 더 정비되어야 한다.

북한산 농림산물에 대한 유통업체 및 최종소비자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다. 그러나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최근 원산지 표시제도

가 강화되어 북한산 농림산물의 원산지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반입 및 유통 참여자와 감독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록 1

2005년 북한산 농산물 반입 대책

통일부, 2005. 1.

1. 기본방향

- 남북 간 농산물 교역질서 확립 및 내실화 추진
- 국내 수급여건, 북한 내 생산량, 국내생산자 보호 등을 감안, 품목별 한도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

2. 방침

- 「국영무역품목」은 지정기관 인도조건으로 매건 별 관계부처 협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
 - 「집중감시품목」(위장반입 빈발 품목)에 대해서는 북한 내 생산량 등을 고려 한도물량 설정 운영
 - * 「집중감시품목」: 녹두, 팥, 대두(콩나물 콩 포함), 참깨, 고추
- 「승인을 요하는 품목」중 외국에서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국내수급여건과

북한 내 생산 등을 감안해 정한 한도물량 범위 내에서는 협의 절차 없이 반입 승인

- 한도물량 초과 시에는 관계부처 협의 후 승인

○ 기타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승인여부 결정

3. 품목별 승인기준

□ 국영무역품목

○ 대상품목

- 양파, 마늘, 고추, 녹두, 팥, 생강, 메밀, 대두(콩나물 콩 포함), 낙화생, 참깨, 천연꿀, 인삼

* 국내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 부족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북한에서 반입가능 품목(국영무역 품목 중 쌀, 보리, 오렌지, 감귤류 제외)

○ 국내수급상황, 반입가격, 품위, 수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입승인 여부 결정

- 가격 조건은 시장접근물량의 최근 3회(또는 3개월) 평균 도입낙찰가격, 또는 최근 국제가격의 $\pm 10\%$ 이내
- 승인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경 시 사유서 등을 검토 처리

* 집중감시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승인 내용 및 기간연장 원칙적 불허

- 고추, 팥, 녹두, 대두(콩나물 콩 포함), 참깨 등 「집중감시품목」은 한도물량 설정 및 1회 반입한도 축소

- 국내 반입 후 판매방법(내수 또는 수출용)에 대해 구분해 처리
 - 내수용은 전량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인도, 사전 인수도 조건 등을 협의 후 반입
 - 수출용(수출가공용 원료 포함)은 수출이행보증금제도 도입 또는 관세청과 협의 보세구역에서 직수출 조건으로 시행
 - ※ 「집중감시품목」 한도물량은 매년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시

□ 관세율이 저율인 승인을 요하는 품목

- 대상품목 : 관세율이 저율(70% 이하)로 북한에서 생산 반입이 가능한 품목
 - * 들깨, 당면, 땅콩조제품, 참깨분, 고추장, 메주 등
-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국내수급여건 및 국내생산자보호 필요성, △대북 설비투자 후 반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 결정
 - 대상 품목별 연간 반입한도 물량과 1회당 반입물량을 설정해 그 범위 내 승인여부 결정
 - * 반입대책 협의 시 반입 한도물량과 1회당 반입물량이 확정된 품목은 별도 협의절차 생략
 - 대북설비 반출 후 반입 품목(고추장, 땅콩조제품 등)에 대해서는 교역업체의 기투자분에 대한 손실보전 차원에서 일정량 반입을 허용
- 반입승인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경 시 사유서 등을 검토 처리
 - ※ 관세율이 저율인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한도물량도 매년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시

□ 계약재배 품목

- 계약재배를 통해 반입하는 품목의 경우 국내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반입여부 검토
 - 계약재배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 의견 사전 수렴
 - 한도물량이 정해져 있는 품목의 계약재배 경우 일반 한도물량과는 별도로 한도물량을 설정 운영(관계부처 협의)

4. 반입승인 및 통관 절차 강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준수
 - 남북교역사업자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여부 확인(법 제9조 3항, 제27조)
 -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대한 승인여부 확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6조, 고시 제3조)
- 위장반입 방지를 위해 북한산 확인 절차 강화
 - 위장반입 우려가 있는 「집중감시품목」에 대한 관리 철저
 - 제3국 보세구역 경유 및 환적물품에 대한 심사 강화
 - 남북원산지 확인 협의서 시행에 따라 확인 철저
- 농수산물유통공사 인도조건 승인품목 관리 철저
 - 보세구역 내에서 반입신고 전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양도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세관에 반입 신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북한→남한 직수송 조건으로 승인
 - ※ 본 반입대책은 다음 대책 마련 시까지 유효. 단, 내용변경 등을 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처리함

부록 2

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일반소비자)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구입과 선호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북한지역 방문객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택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김영훈 02-3299-4367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친인척 중 북한이 고향이거나 북한에 중요한 연고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2. 귀하는 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한다
 - ② 대체로 한다
 - ③ 대체로 안한다
 - ④ 거의 안한다

3. 귀하는 북한산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북한산 농림수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 → 문항 4로 가세요.
 - ② 북한산 상품을 구입했으나 농림수산물을 구입한 적은 없다. → 문항 14로 가세요.

- ③ 북한산은 아무 것도 구입한 경험이 없다. → 문항 15로 가세요.
- ④ 모르겠다. → 문항 15로 가세요.

※ 농림수산물이란 가공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가공을 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의미합니다. (예 : 고사리, 산채, 버섯, 송이, 깨, 꿀, 송화가루, 명태, 꼬막, 건새우 등 농림수산물과 이들의 건조제품, 분말제품, 통조림 등이 포함되며 과자류, 국수류, 각종 장류, 주류 등 가공식품은 제외합니다.)

4. 귀하는 북한산 농림수산물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셨습니다?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할인마트 ② 백화점 ③ 재래시장 ④ 도매상
- ⑤ 온라인 쇼핑 ⑥ 북한방문 ⑦ 기타

5. 왜 북한산 농림수산물을 구입하시게 되었습니까? 2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북한산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② 가격이 저렴해서
- ③ 품질에 대한 기대 때문에 ④ 청정 이미지 때문에
- 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⑥ 북한산인지 모르고 구입
- ⑦ 기타

6. 귀하가 구입하신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주된 용도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소비용 ② 선물용 ③ 재판매용 ④ 식재료용

7. 귀하가 구입하신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가격에 대해 귀하의 평가를 구합니다. 지불하신 가격이 어떠하십니까?

- ① 많이 저렴하다. ② 대체로 저렴하다. ③ 적절하다.
- ④ 대체로 비싸다. ⑤ 많이 비싸다. ⑥ 모르겠다.

8. 귀하가 구입하신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품질에 대해 귀하의 평가를 구합니다. 국산 농림수산물의 품질을 100점으로 할 경우, 북한산 또는 중국산 동일 농림수산물의 품질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 국산 농림수산물 품질 100 점
- 구입하신 북한산 농림수산물 품질 점
- 중국산 농림수산물 품질 점

9. 귀하가 구입하신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안전성(잔류농약, 유해성, 위생처리 등)에 대해 귀하의 평가를 구합니다. 국산 농림수산물의 안전성을 100점으로 할 경우, 북한산 또는 중국산 동일 농림수산물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 국산 농림수산물 안전성 100 점
- 구입하신 북한산 농림수산물 안전성 점
- 중국산 농림수산물 안전성 점

10. 귀하가 구입하신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해 귀하의 평가를 구합니다. 국산 농림수산물의 이미지를 100점으로 할 경우, 북한산 또는 중국산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 국산 농림수산물 이미지 100 점
- 구입하신 북한산 농림수산물 이미지 점
- 중국산 농림수산물 이미지 점

11. 귀하는 북한산 농림수산물을 다음에도 구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12. 귀하가 최근 1년간 북한산 농림수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면 1년간 구입품목, 구입횟수,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품 목	구입 횟수	총구입금액 (원)
(작성예) 견고사리	3회	12,000 원
1.		
2.		
3.		
4.		
5.		
6.		
7.		
8.		
9.		
10.		

13. 귀하가 최근 1년간 농림수산물 이외의 다른 북한산 상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면 구입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1년간 _____ 원

 북한산 농림수산물 구입 경험자의 응답은 여기에서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 귀하가 최근 1년간 농림수산물 이외에 다른 북한산 상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면 구입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1년간 _____ 원

15. 귀하가 북한산 농림수산물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가지만 선택해 중요한 순서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품질이 의심되서 ② 안전성이 의심되서 ③ 가격이 비싸서
 ④ 눈에 띄지 않아서 ⑤ 관심이 없어서 ⑥ 북한의 이미지가 나빠서
 ⑦ 기타

부록 3

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북한방문객)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구입과 선호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북한지역 방문객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택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김영훈 02-3299-4367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응답자 정보

거주지역 :

도/광역시

시/군/구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3. 귀택의 한 달 평균 소득은(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소득) ?

- ① 200만 원 미만 ② 200~300만 원 미만 ③ 300~400만 원 미만
④ 400~500만 원 미만 ⑤ 500~600만 원 미만 ⑥ 600만 원 이상

4. 친인척 중 북한이 고향이거나 중요한 연고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귀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북한지역을 방문 혹은 관광하셨습니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6. 이번 북한지역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관광 ② 협력사업 협의 및 참관 ③ 기타 ()
7. 이번에 방문한 북한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금강산 ② 개성 ③ 기타 북한지역
8. 이번 북한 방문에서 북한산 농림수산물을 구입하셨습니다?
 ① 예 → 문항 9로 가세요 ② 아니요 → 문항 13으로 가세요

※ 농림수산물이란 가공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가공을 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의미합니다. (예 : 고사리, 산채, 버섯, 송이, 깨, 꿀, 송화가루, 명태, 꼬막, 건새우 등 농림수산물과 이들의 건조제품, 분말제품, 통조림 등이 포함되며 과자류, 국수류, 각종 장류, 주류 등 가공식품은 제외합니다.)

9. 이번 북한 방문에서 구입한 북한산 농림수산물은 무엇이며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품 목	구입금액 (달러)
(작성 예) 송이통조림	24 달러
1.	
2.	
3.	
4.	
5.	

- 국산 농림수산물 안전성 100 점
- 북한산 농림수산물 안전성 점
- 중국산 농림수산물 안전성 점

16.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해 귀하의 평가를 구합니다. 국산 농림수산물의 이미지를 100점으로 할 경우, 북한산 또는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 국산 농림수산물 이미지 100 점
- 북한산 농림수산물 이미지 점
- 중국산 농림수산물 이미지 점

17. 기회가 있다면 귀하는 북한산 농림수산물을 다음에도 구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 김성훈 등. 1996. 「남북 경협현의 현장」. 경실련통일협회총서4. 시민의 신문사.
- 김영훈. 남북 농산물교역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남북 농산물교역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발표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 8. 25
- 김영훈 등. 1999. 남북 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운근 등. 남북한 농업부문 교역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김장한. 2001. “2001년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전망.” 통일경제 1·2월호. 현대경제연구원.
- 농림부. 각년호. 농림수산물통계연보.
. 1999. 시장접근물량수입관리 종합참고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08. 9. 남북교역 활성화 방안.
. 2008. 9. 북한산 농산물 유통실태 보고서.
. 1996. 북한산위장반출실태. 1996년 중국-북한간 국영무역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역할 모색.” 비전 2011프로젝트 자료.
- 조동호. 2001. 남북경협의 제도화 방안. KDI.
- 유재현 등. 1999. 북한의 농산물교역실태와 남북한 교역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태욱, 김수용, 설광언. 1989. 「서독의 대공산권 경제교류협력현황 및 제도분석」.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임정빈 등. 2000.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외무부. 1992. 남북거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최세균 등. 1996. “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제도 개선방향.” 농촌경제 1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2008. 3. 2007년 작물통계.
-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 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 각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북한농업동향. 각호.

한국무역협회. 2001. 2. 남북교역물품 운송 및 통관실태조사.

허상선. 1996.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국내유통실태와 한국농업의 대응방안.

KOTRA. 북한뉴스레터. 각호.

. 북한무역동향. 각호.

연구보고 R574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및 유통실태 조사연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8. 12.

발 행 2008. 12.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e-mail: dongyt@chol.com

ISBN 978-89-6013-106-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